

연구보고서 2009-05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법무법인의 설치를 통한 변호사실무교육의 내실화 방안

책임연구자 : 함 영 주

2009. 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 출 문

제출처: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본 보고서를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법무법인의
설치를 통한 변호사실무교육의 내실화 방안」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8월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자: 함 영 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자: 황 경 웅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자: 황 일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 차

I. 연구의 목적	1
II. 변호사 실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4
1. 사법연수원 실무교육 방식의 현황 및 한계	4
가.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변천	4
1) 실무수습기간	4
2) 실무수습의 내용	6
가) 필수수습항목	6
나) 권장업무	7
나. 연수원에서 검토된 변호사실무교육의 개선방안	8
1) 개선요구의 시발	8
2) 사법연수원 교수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선안 및 검토 결과	9
가)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세미나	9
나) 1998년 사법연수원 교수세미나	9
다) 1999년 교수세미나에서의 개선요구사항	10
라) 2000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	11
마) 2001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17
바) 2002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23
사) 2004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34
아) 2005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40
자) 2006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42
다. 탈락형 공무원 선발시험방식에 의한 변호사교육의 근본적인 한계	51

2.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변호사양성에서의 주안점 및 주의할 점 ...	54
가. 변호사 양성기관으로 특화	54
나. 변호사 실무교육의 방법 및 교육내용 설정에서의 주안점	55
1) 현장에서 행하는 실용 교육	55
2) 다양성과 기본기를 살리는 교육	56
3). 민·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조화되는 교육	57
다. 올바른 변호사 실무 교육의 중요성	58
라. 사법연수원생들의 변호사 사무실 실무수습의 실태	59

III. 국내외 변호사실무수습의 실태 및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61

1. 각국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현황실태	61
가. 외국의 경우	61
1) 미국의 경우	61
가) 임상법학방식(legal clinic)의 실무 교육	61
나) 일정 요건 하에 로스쿨 학생의 변호·대리 허용	65
다) 모의재판 경연대회(moot court competition)	66
라) 학생 로클릭	66
2) 일본의 경우	67
3) 독일의 경우	68
4) 프랑스의 경우	69
가) 변호사연수원의 연수	69
나) 변호사적격증명서(CAFA) 취득시험	69
다) 실무연수	70

2. 우리나라에 있어서 변호사실무수습의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검토 ... 70

가.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실무수습 주관기관으로서의 한계 및 변호사

실무를 위한 경쟁시스템 구축	70
1) 논의의 필요성	70
2)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기초적 변호사 실무교육	72
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제도의 한계에 대한 검토	73
1) 수습을 받아줄 회계법인의 부족 문제	73
2) 공인회계사 수습제도의 합헌성 여부	74
3)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수립에서 고려할 사항	75
다. 도제식 수업, 실제 사례로 하는 수업의 필요성	76
라. 변호사로 바로 개업한 경력의 변호사 실무 강사에 의한 변호사 실무 교육의 필요성	77
마. 교육적 기능을 잃지 않는 실무 교육의 모색	79
바. 변호사 직무대리자격 부여의 필요성	80

IV. 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방향과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의 설치를 통한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의 가능성 · 81

1.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의 설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	81
가. 사법연수원의 변호사 실무 교육과의 구별	83
나.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 설치의 효과 또는 장점	
다.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안	86
1)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실무교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신청과정에서의 휴폐업신청서 제출과의 충돌문제	86
2) 겸직금지 규정의 저촉여부	91
가) 공무원인 교원과 사립대학의 교원	91
나) 겸직허용 공무원	92
다) 검토	97

2. 학내에 설치되는 법무법인을 학교기업의 한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 여부	97
가. 관련 규정: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97
나. 학교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종목	100
다. 대학 내 학교 기업 관련 학칙 규정	101
3. 대학의 부설·부속·협력병원과 학내 법무법인	102
V. 결론	105
참고문헌	114

I. 연구의 목적

오랜 준비를 거쳐 마침내 2009년 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법학교육이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은 기존의 법학교육과 사법연수원 교육을 통합함은 물론 21세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시작된 지 한 학기가 경과된 현 시점에도 변호사를 위한 실무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판사 및 검사의 선발방안에 대하여 뚜렷한 기준이 수립되지 않아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와 법학 교육계 전체의 관심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양한 법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 양성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은 최종 단계의 전문 직업교육기관¹⁾이라는 특성에서 볼 때 당연한 과제에 속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실무교육은 기존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의 약점이었던 현장 중심형 법률실무교육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종래 법률실무교육을 담당해 왔던 사법연수원의 변호사 양성교육의 약점도 보완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종래 연수원의 변호사양성교육이 법관과 검사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사 교육은 부수적인 것이었다는 제도 내재적 한계와 변호사 양성을 왜 국가의 비용으로 하느냐는 교육기관 정체성 자체의

1) 최종 단계의 전문 직업 교육기관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료 및 적절한 자격시험의 통과만으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이 확보되도록 교육의 형식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변호사자격 취득 후 개별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사무실에 맞는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것은 그 사무실의 특성에 따른 재교육의 성격인 것이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별 변호사사무실에서 재교육을 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의 내용이나 형식을 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때문에 변호사 단체나 변호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법학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을 주문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를 적극 구현하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한계에 직면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 양성교육의 대폭적인 확대 및 보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양성교육 또는 변호사 실무교육은 기존 연수원의 실무교육에서 조차 행하지 못한 새로운 현장형 실무교육방법을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법무법인의 설립에 의한 현장 중심형 변호사실무교육 방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법무법인의 설립은 변호사 실무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법무법인의 설립에 대한 검토는 시급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기존 법과대학과 연수원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법학교육의 틀을 바꾼 것이라고 할 것인데 정작 기존의 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교육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틀을 바꾼 것이 아니라 외형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교육방법론의 개발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장애요소를 모두 고려한다면 교육용법무법인의 설립은 매우 매력적인 방안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법무법인을 활용한 실무교육방식은 기존 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변호사실무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은 비용으로 효용을 배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는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수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존의 변호사실무교육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교육방법이 되기 힘들었던 것을 보완한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실제 사건을 가지고 행해지는 변호사 교육이라는 점에서 참가한 학생들에게 더 이상 모의사건이 아니라는 현장감을, 실무 및 이론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에게는 실무와 이론의 접목시도나 자칫 상실할 수 있는 실무 감각을 유지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방법을 검토함에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설치되는 교육용 법무

법인이 기존 법조계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개설되는 법무법인은 기본적으로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 법무법인의 설립 자체가 법조 실무 자체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내 법무법인의 설립 및 활용은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법관과 검사의 양성을 겸했던 연수원의 관료 또는 준 관료 교육에서 보다 철저한 변호사양성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용 법무법인은 종국적으로 기존 연수원과 다른 새로운 인력을 받아야 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에게 그동안 사실상 필수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재교육 기간을 없애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법조실무계에게 서로 이익이 되는(윈-윈)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교육용 법무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 또 이들 법무법인을 통하여 좀 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법률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법조인력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 양성모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Ⅱ. 변호사 실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교육 방식의 현황 및 한계

가. 사법연수원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변천

1) 실무수습기간

사법연수원은 1996년까지 교육과정을 전기, 실무, 후기 과정으로 3분하는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1997년부터 이를 개편하여 교육과정을 제1학기 기초과정, 제2학기 발전과정, 제3학기 실무과정, 제4학기 종합과정으로 4분하는 교육체제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1996년까지는 실무수습기간이 법원 6개월, 검찰 4개월, 변호사 2개월로 할당되어 실시되다가 1997년부터는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 각 2개월씩 실무수습기간을 실하게 되었다.

실무수습기간의 단축은 학기제·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실시²⁾ 및 전

2) 사법연수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새로운 모델을 택한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첫째 사법연수원 교육의 기본틀을 '관(官)' 중심의 관·검사 양성에서 '민(民)' 위주의 변호사 양성교육으로 전환하고, 둘째 전문성을 갖추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할 공익법조인의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사회의 다원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법조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교육의 본격적 실시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사운영에 있어서 학기제·학점제 등 대학원 운영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나아가 학자교수 초빙을 통한 교수진용의 다양화 등 법조와 법학의 이상적인 협동을 지향하고 있다.

학기제는 제1학기 기초과정, 제2학기 발전과정, 제3학기 임상과정, 제4학기 완성과정 등 순차로 연결되는 4가지 과정을 통하여 연수생들이 벽돌을 쌓듯 차곡차곡 법조실무능력을 쌓아 올라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학점제는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각자의 취향에 따른 과목선택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2년간의 교육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중 3분의 1 정도를 전문 과목 강좌에 배정하였고, 조세, 지적재산권, 국제, 사회, 경제 등 7개의 계열별로 40개 과목이 넘는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각 전문분야에서 관련 과목들을 포괄하는 집중연구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백화점식 과목 나열을 지양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세부과목을 한 묶음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계열화를 지향하여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망라하는 7개의 전공계열을 설치하였다.

연수생 각자는 7개의 전공계열 중 1개의 전공계열을 선택하여야 하며 1,2학기에 동일한 전공계열내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전공계열은 각 연수생들이 하나의 전문분야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연구를 가능케 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사법연수원홈페이지 http://jrti.scourt.go.kr/information/practical_01_01.asp?flag=0의 설명).

그러나 이러한 학기제와 학점제를 병행한 계열과정은 상당부분이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의 교과목과

문화교육의 강화에 따른 강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교육시간의 배분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습내용이 그 기간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법연수원 자체의 평가에서는 변호사실무수습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체 직역별 실무수습기간 중 차지하는 비중이 1/6에서 1/3으로 증가하여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수습기간이 동등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변호사 교육의 강화라는 사법연수원 교육목표의 중심축의 이동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³⁾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6개월), 검찰(4개월)의 실무수습기간을 줄여 법원, 검찰,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2개월로 같게 된 것을 두고 변호사교육의 강화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상하다. 변호사실무수습기간보다 법원실무수습기간이 3배, 검찰실무수습기간이 2배가 많았던 것을 법원과 검찰실무수습이 기간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여 그 부분을 줄인 것을 상대적으로 변호사교육이 강화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실무수습기간이 전체적으로 축소되었는데 변호사실무수습기간은 원래부터 2개월에 지나지 않아 그대로 두었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시간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는 변호사실무수습을 두고 다른 실무교육시간이 줄었다고 하여 변호사교육의 강화라거나 사법연수원 교육목표의 중심축이 이동되었다는 표현은 변호사실무교육을 애써 강조하려는 의도가 표현된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법연수원의 변호사 교육은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중심이 되지 못

중첩되므로 이들 과목을 왜 실무수습기관인 연수원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약하다. 또한 연수원생의 증가로 연수원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인원이 한해를 기준으로 20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왜 대다수가 변호사로 배출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수원에서 하여야 하는나라는 보다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법원과 검찰실무수습기간을 줄이면서까지 2년간의 교육과정 내에 이수해야 하는 학점 중 3분의 1 정도를 전문과목 강좌에 배정한(조세, 지적재산권, 국제, 사회, 경제 등 7개의 계열별로 40개 과목이 넘는 다양한 교과목) 것은 이들 과목 중 상당수가 이미 법과대학이나 법과대학원에서 교육이 되고 있거나 교육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연수원 교육의 정체성마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었다.

3) 심담, 변호사실무수습 충실화 방안,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사법연수원, 2006, 81면.

하고 있으며 연수원은 연수원 나름 판사 및 검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관점이 반영된 분석이 아닌가 한다. 결국 1997년부터 행해진 실무수습기간의 단축은 변호사실무수습기간이 2개월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무수습기간의 축소의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를 기점으로 연수원의 교육은 학기제·학점제와 같은 대학의 교육방식을 택하면서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의 교육내용 및 과정을 닮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연수원의 수습 과목에 외국법 및 법학인접분야의 과목들과 일반교양과목도 다수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때부터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합격생들의 실무수습기관을 넘어 법률이론과 교양을 모두 교육하는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과 유사한 이론중심의 교육기관으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2) 실무수습의 내용

가) 필수수습항목⁴⁾

① 사법연수원이 사법연수생에게 변호사실무수습시 필수수습항목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기초교육 2회⁵⁾, 민사와 관련하여 상담 입회 1회, 소장작성실무 2회⁶⁾, 준비서면(답변서) 작성실무 4회⁷⁾, 증거신청서 작성실무 2회⁸⁾, 지도관 사건 법정참관 1회⁹⁾, 형사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수임윤리지도 1회, 형사의뢰인 상담입회 1회, 피고인 접견 입회 1회, 피고인 신문요령 1회¹⁰⁾, 변론요지서 작성 요령 1회¹¹⁾, 변론요지서 작성 1회¹²⁾, 지도관 사건 법정참관 1회¹³⁾, 공익활

4) 2006년 사법연수원 실무수습기준임; 사법연수원 발간, 앞의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110면 변호사 실무 필수수습 항목표 참조.

5) 부임신고서 제출, 담당지도관은 지방변호사회.

6) 소장초고 2건 제출

7) 준비서면(답변서) 초고 4건 제출

8) 증거신청서 사본 2건 제출

9) 방청기 1건 제출

10) 피고인 신문사항 1건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 4회¹⁴⁾로 이루어져 있다.

② 사법연수생들은 필수수습항목에 따라 작성한 서류의 초고 또는 사본을 지도관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③ 필수수습항목 중 미수습 항목이 있을 때에는 지도관 변호사는 미수습 항목 확인서에 미수습업무의 내용과 미수습 사유를 기재한다. 예컨대 국제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느라 형사와 관련된 필수 실무수습항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국제 업무를 수습하였음을 미수습사유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나) 권장업무

①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생들에게 변호사실무수습시 권장업무로 권고하는 사항으로는 변호사회 통합교육 5일¹⁵⁾(아래 일정표의 내용과 같다), 민사와

- 11) 변론요지서 작성 1건 제출
- 12) 변론요지서 초고 1건 제출
- 13) 방청기 1건
- 14) 담당지도관은 지방변호사회
- 15) 참고자료: 서울지방 변호사회 통합교육 일정표

제36기 갑군 사법연수생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강의 일정표

[강의 장소 : 서울고등법원 1층 대회의실]

강의 일자	강의 시간	제목	강사
5. 1.(월)	10:00 ~ 10:15	부임식(서울고등법원 1층 대회의실)	
	10:20 ~ 11:50	변호사 윤리 및 공익활동	이우승 제1부회장
	13:20 ~ 15:00	변호사로서 첫 출발	이수희 변호사
5. 2.(화)	10:00 ~ 11:50	국내 및 해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사례	최정환 변호사
	13:20 ~ 14:50	형사변호실무	권광중 변호사
	15:00 ~ 17:00	정부기관 변호사로서의 활동	서정호(재정경제부 조사관) 김성태(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5. 3.(수)	10:00 ~ 11:50	법률사무소 운영요령	이상운 변호사

관련하여 법정 외 증거조사 1회, 보전처분신청서 작성 1회, 상소이유서 등 작성 1회 등이 있다.

② 형사와 관련하여서는 보석(구속적부심) 신청서 작성 및 심문 참관 1회, 법정외 증거조사 1회, 상소이유서 작성 1회 등이 있다.

나. 연수원에서 검토된 변호사실무교육의 개선방안¹⁶⁾

1) 개선요구의 시발

1995년 법조개혁과동으로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의 개선요청에 따라 법조인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대폭 증원하였다. 이에 96년 500명, 97년 600명, 98,99년 각 700명, 2000년 800명, 2001년 이후 1000명선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이후에 변호사로 바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이 급증하여 관중심의 판검사양성을 하던 연수원은 변호사양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에 1996년에 연수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여 1997년(28기)부터 학기제와 학점제에 의한 대학원 운영방식을 도입하였고 전문분야교육도 강화한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다. 이후 연수원은 기본적으로 이 때 형성된 체계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부분이 수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후 2002년에 연수원은 보다 본격적으로 연수원의 교육이 판검사 양성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판사, 검사, 변호사의 공통교육인 변호사 교육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였다.¹⁷⁾ 변호사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여 각 직역에 공통되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연수원 내 연수과정에서 “변호사 중심교육의 확대” 또는 “각 직역에 공통되는 교육의

	13:20 ~ 15:00	사내변호사의 업무현황과 전망	신홍철 변호사
5. 4.(목)	10:00 ~ 11:50	법무법인 변호사로서의 활동	조우성 변호사
	13:20 ~ 16:20	가사소송실무	이명숙 변호사
6. 30.(금)	15:00 ~ 16:00	종합평가회(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	

16) 사법연수원, 2002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1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2, 5-11면.

17) 사법연수원, 2003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2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3, 34-39면.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래에서는 그 동안 논의된 변호사실무교육과 관련 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술한다.

2) 사법연수원 교수세미나에서 제시된 개선안 및 검토결과

가) 1997년 사법연수원 교수세미나

교재와 수습기록의 재편 및 전임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실무수습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변호사협회와의 유대강화가 강조되었다. 그 외 변호사윤리교육의 강화와 교과내용에서 분쟁해결의 종합적 시각이 강조되고 설득기법, 비송부분야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연수원생들에 대한 평가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1998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목표 : -사법연수원의 변화와 변호사중심교육의 실현-

① 변호사 교수인력 및 교육시간의 부족

변호사를 위한 교육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실무연습시간이 특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교수인력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② 변호사 강사에 대한 불만

연수생들의 변호사실무 과목 강사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변호사실무 강사들의 강의와 평가의 균질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전임 또는 전담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들이 교재 및 기록개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내용의 편중과 다양성 부족

계약실무 등 분쟁예방교육이 필요하며 분쟁해결 위한 종합적 판단능력배양이 필요하다. 실습 및 사례 연구도 필요하며, 상담·협상·변론 등에 대한 시청각 교육도 필요하다.

④ 실무수습 부실

지도관 및 연수생들의 무관심, 시험준비가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하는 3대요인으로 지적된다. 실무수습의 내실을 위해서는 배정사무실 검토, 시험부담 완화, 수습상황 점검 등이 필요하다.

조직개선의 면에서는 변협내 자문기구 및 '간사'변호사직의 개설, 연수원과 상시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며, 지도요강 마련 및 지도상황에 대한 면밀한 확인점검도 필요하다. 시험부담과 관련해서는 4학기에 시험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⑤ 25-27기 변호사 진출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4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로 진로가 확정되었다는 응답이 63%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를 고려하면 관검사 양성교육과 변호사양성교육으로 교육을 2원화 하여 변호사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빠르면 1학기 종료 후 변호사교육으로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⑥ 지나치게 이론중심적이고 서면중심적인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관검사 임용이 중심이 되더라도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서면중심적인 평가제도는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틀에 박힌 형식적인 결론 외에 쟁점파악, 각종 변론방법, 설득의 기법 등도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⑦ 취업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의 교육이 필요

다) 1999년 교수세미나에서의 개선요구사항; 세미나 주제 :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① 민사평가

출제문제 편향, 분쟁해결능력 평가결여, 설득능력 평가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② 형사평가

변호사윤리에 대한 평가 결여, 출제문제 확보곤란(객관식·문제은행의 고갈,

주관식·기록확보곤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③ 민·형사 공통

채점자간의 편차가 심해 채점의 객관성이 부족하다. 전임교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채점인원 및 시간이 부족하다.

④ 원내 연수

강의와 평가의 균질성 확보, 전담교수와 전임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⑤ 실무수습

수습의 내실화와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하다. 지도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

⑥ 토론

기본실무과목을 기초과정과 고급과정으로 이원화, 고급과정은 진로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고급과정 미 이수자 석차폐지, 모의재판 도입하여 실연 연습이 필요하다. 민·형사 변호사실무 통합론이 제기되었다.

라) 2000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 2001년도 연수제도 개선 방안¹⁸⁾

① 교육현황

1학기(1학점): 교재중심의 이론 강의 5회¹⁹⁾, 기록 작성 2회(그 중 1회는 작성, 1회는 강평)

2학기(1학점): 문서작성 및 강평 각 3회 (교수별 강평은 월 1회 정도)

3학기: 실무수습

4학기(2학점): 문서작성 1건만 한 후 평가

강사: 12명의 변호사가 1학기 6회, 2학기 3회, 4학기 1회 출강하고 출제 및 채점을 분담, 강사의 경력 분포(법관 경력자 10명, 검사경력자 1명, 처음부터 변호사 활동 경력자 1명, 사법시험 5회부터 23회까지 분포, 연수원 출강경력 1-4년으로 다양함)

18) 사법연수원, '00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1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0, 47면.

19) 교재강의의 중간에 청구취지 작성연습, 답변서 작성연습, 준비서면 작성연습 등간 간단한 연습문제 강의를 병행함

② 문제점

- 강의내용의 중복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므로 결국 민사재판실무의 교재강의 및 판결작성실무는 많은 부분에서 강의내용이 중복됨, 민사재판실무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룬 주제를 민사변호사 실무시간에 다시 다루면서 깊이에 있어서는 민사재판실무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분쟁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대한 교육 부족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에 있어 판결서에서 같은 세밀함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교재도 상당부분 모범적인 청구원인 등 기재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면서 실시방법은 어떻게 하고 요건사실은 무엇이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두고 판결에 의한 판단을 함에 있어 어떻게 이유 설시를 할 것인가 하는 민사재판실무의 접근방식에 가까운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형사 분야에서는 교육시간의 부족과 실무기록연습 시간부족 및 내용편중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변호사실무의 중점은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혼재되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사실상태의 분쟁을 두고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접근방법을 설정하여 권리구성을 하고 법적 쟁점을 찾아낼 것인가 하는 사고능력의 배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변호사실무평가를 P/F로 전환하고 강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시청각교재의 도입과 모의재판 등에 의한 실습 활성화, 연수원생의 법률상담사례의 수집 등의 방안이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정에서 제시되었다.

더불어 실무수습의 실질화, 변호사 협회와의 협조로 지도변호사 배정에 신중을 기하는 문제, 수습결과물제출의 의무화, 대응법원에 명단을 통보하고 국선변호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 문장력과 설득력 배양 부족

쟁점에 대한 법리논쟁보다는 사실이 어떻게 인정되느냐가 사건의 향배를 결

정하는 경우가 실제로 훨씬 많음에도 연수생 교육에서는 사실인정의 방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변론능력의 배양에는 소홀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다툼을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충실한 논리전개가 담긴 준비서면의 작성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연수원에서는 문장력과 설득력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에서도 별로 강조되지 않고 평가에서도 채점기준에 거의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민사절차에 대한 총체적 이해 부족

상당수 연수생은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연계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민사재판실무시간에 충분히 강의가 된 내용이라도 민사변호사실무 시간에 따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문제가 되면 마치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인 듯 오해하는 현상도 있다. 이는 과목의 분리운영으로 무의식 중에 주제의 연결을 차단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소송절차가 변호사의 제소로부터 공격방어방법의 주장과 증명을 거쳐 판결에 이르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최종학기를 직역에 따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변호사진출자만을 위한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사법연수원시스템이 얼마나 유지되겠느냐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 교재보완의 필요성

현재의 교재는 이론적인 측면의 설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변호사실무의 특성이나 구체적 사례의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전처분 단계부터 강제집행에 이르는 변호사 업무의 다양한 장면을 사례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교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입증(증명)활동에 대한 교육 비중

입증(증명)방법의 종류 및 그 증거신청의 방식에 대한 강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어떤 경우에 어떠한 입증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재판실무상 채택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 입증방법의 선택,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등 입증활동에 대한 강의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강사에 대한 불만과 강사확보의 문제

변호사인 강사들은 원내 교수들에 비해 시간부족 등으로 강의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될 개연성이 높고 실제 이에 대한 연수생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임변호사교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강의준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강의영역의 조정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시험실시 시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변호사강사들의 시간부족 등을 고려하여 시험기간의 제일 앞쪽에 변호사과목을 배치하는 등 원내교수보다 긴 채점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운영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수원이 일산으로 이전하면 과연 현 서초동의 경우처럼 각 반에 2명씩의 변호사강사마저 확보할 수 있을 지 우려되므로 그에 대한 사전대비도 필요하다.

- 학점배분

보전처분신청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입증활동 등을 모두 포괄한 민사변호사활동 영역의 학점이 1학점이라는 것은 소송절차 전체 과정의 구성 비율에 비추어 부적절하다는 인상이다. 전공과목들이 대체로 2학점으로 되어 있고 외국법, 손해배상소송, 보전소송 등이 1학점인 것과 대비하더라도 민사변호사 실무 전체의 학점비중이 1학점이라는 것은 불균형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과목구분을 민사재판(판결서작성) 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로 나누는 체제에서는 변호사실무의 학점비중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과목의 성격과 내용상 사진선다형이나 진위형과 같은 문제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실무시험에서는 1학점 1시간 원칙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그 때문에 사실상 2학점 과목처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직시가 필요하다.

③ 재판실무와 변호사실무의 통합운영 여부에 대한 31기 연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00년 하반기 실시)

- 교수들이 판검사 교육을 우선하여 변호사중심교육으로 변호가 미흡하다.
- 변호사실무 시간 및 학점 증대, 실무기록작성 건수와 시간 증대 필요하다.
 - o 교재 및 기록 개편이 필요하며 전담교수의 확보가 필요하다.
 - o 강평이 무성의 하다.
 - o 현장실무중심교육 및 교과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o 1+1(1년 교육 후 1년은 직역별 교육) 체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 민사재판실무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은 다음과 같다.
 - o 통합운영하고 변호사 업무사항은 특강형식으로 족하다는 견해(82명 중 32명)²⁰⁾
 - o 통합하되 원내교수와 변호사강사 복수담당제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82명 중 19명)²¹⁾

20) 이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혼란스럽다는 의견,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과 같은 내용과 방식의 교육은 시간낭비라는 견해, 대부분의 변호사 강사들은 현실적으로 강의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변호사 작성의 서면 등을 법관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변호사의 업무는 시보기간을 활용하여 습득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견해, 원외 변호사강사에 의한 강의는 충실도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재판실무와 공통되는 부분은 원내교수가 담당하고 실제 경험이 강조되는 부분은 원외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원외 변호사의 실무 강의는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므로 특강형식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변호사실무는 민사재판실무와 중복되며 변호사로부터 배울 것은 사무실 운영이나 경험담 같은 특수한 것에 국한된다는 견해, 변호사실무교육을 책으로 강의하는 방식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 통합운영이 재판 전체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실제법적 지식을 쌓는 것이 연수과정에서 중요하고 소송절차를 아는 것은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연수과정에서는 민사재판실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 과목의 유사성이 높고 체계적인 이론은 현재 민사재판실무 담당교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특수 분야에 관해서만 전문변호사의 경험담을 들음으로써 기초적인 실무의 분위기를 익히고 본격적인 변호사실무는 연수원에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힌 후 실무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 민사, 형사, 검찰, 강제집행,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연수원의 기본과목들은 법원이나 검찰로 진출하는 연수생들보다 오히려 변호사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에게 더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민사재판실무를 배우면서도 그것이 변호사실무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점이 간과되어 별개의 과목으로 느껴지므로 한 과목으로 통합하고 각 논점마다 법원과 변호사의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21) 이론이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그 접근방법이나 강조점이 다르므로 변호사교수의 문제의식을 강의로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민사변호사실무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 증거신청 등 민사재판실무와는 다른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처럼 변호사실무에 고유한 부분은 원외변호사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통합이 타당은 하나 특강보다는

- 현행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82명 중 20명)²²⁾
- 변호사 실무 교육의 내용에 대한 설문²³⁾
- 교육방식²⁴⁾

외부강사의 강의가 더 집중도가 높고 수업에도 내실이 있다는 견해, 민사변호사실무를 위한 지식은 민사재판실무나 보전소송 등 인접과목에서 습득되는 것이지만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에서 습득되지 않으므로 통합은 하되 특강형식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피하자는 견해가 있다.

- 22) 별도로 운영은 계속하되 민사변호사실무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 판사교수가 변호사실무를 강의하면 관점이 달라질 것 같다는 의견, 같은 민사과목이므로 실체법적 이론과 소송법적 지식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구체적 모습은 구별되므로 개별강의에 의한 독자적인 강의진행으로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변호사실무과목도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민사실무와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변호사의 역할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은 다른 것이므로 민사실체법적 지식 습득만이 과목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 변호사실무과목의 장점은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법원과 다른 측면에서 법조를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있는데 두 과목을 합친다면 이러한 장점이 없어지고 변호사실무교육이 소외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통합하여 한 과목으로 운영되면 변호사실무교육은 거의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견해, 변호사로서 필요한 법적 소양이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교수보다 현장에 있는 변호사들의 강의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 23) 각종 서류, 서식에 대한 설명, 실제 송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견해, 소장작성이나 변론요지서 등 소송에서 직접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형식 등을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분 등은 민사재판실무와 많이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실제 송무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실체법과 관련하여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견해, 각종 서류작성이 바로 시험문제에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강의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견해, **강평을 실제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소장**에서부터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서류작성에 관해 강의가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견해, **변호사님들의 수업이 부실하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딱딱한 수험일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 민사변호사실무 교육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견해, 신변잡기식의 경험담 위주보다는 실제 변호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의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강의가 될 것**이라는 견해, **일반 민사실무강의만이 아니라 전문분야 변호사를 초빙하여 특강형식으로 전문분야의 내용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변호사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교수진 확보나 교재내용이 부실하고 민사재판실무와의 과목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 어음 조세 강제집행 등 각 분야별로 변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 변호사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연수원생들은 정작 경매실무와 같은 직접 와 닿는 실무를 원하며 등기, 호적, 공탁, 경매와 같이 법무사업무로 취급되는 영역에도 단독 혹은 합동으로 개업할 연수원생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수습을 받을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견해, 현행처럼 변호사실무를 별도의 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교재가 좀 더 충실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변호사사무실의 운영,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 24) 변호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나 연수원에서의 변호사실무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차라리 연수원에서의 변호사실무교육은 폐지하고¹⁾ 변호사실무수습기간을 늘여 변협에서 변호사이론교육을 1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한 뒤 실무수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변호사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수습에 중점을 두고 연수원수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변호사실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익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1년차의 변호사실무강의는 없애고 시**

- 기타

강의교재나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견해, 변호사실무 시간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수업준비도 부실하고 모범답안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강사를 선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의가 있고 가급적 젊은 변호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견해, 젊은 변호사는 경험은 일천하겠지만 진지함과 수업에 대한 준비정도는 더 낮지 않을까라는 의견, 또한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법원 재직 중의 이야기를 많이 하므로 판사직에 있다가 변호사를 하는 경우보다 바로 변호사로 진출한 분들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외부 변호사 강사들 중에 판사 출신이 많아 수업시간이 재판 실무시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견해 등이 있었다.

마) 2001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2002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²⁵⁾

① 교육현황

1학기(1학점): 교재중심의 이론 강의 5회(각 2시간), 기록 작성 및 강평 각 1회 + 평가

2학기(1학점): 문서작성 및 강평 각 3회 (교수별 강평은 월 1회 정도) + 평가

3학기: 실무수습

4학기(2학점): 문서작성 및 강평 각 1회 + 평가

강사: 13개 반을 각 전임교수 1명과 외부변호사 12명 등 13명이 1개 반을 담당하여 강의와 강평; 변호사가 1학기 6회, 2학기 3회, 4학기 1회 출강하고 출제 및 채점을 분담, 강사의 경력 분포(법관 경력자 10명, 검사경력자 1명,

보를 하면서 선택적으로 지금보다 더 긴 기간을 변호사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사례연구발표 및 토론수업, 실제 변론시의 생생한 경험강의 등의 수업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변호사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 중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을 연수생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소송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감과 책임감의 고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이 견해는 현재 검토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내 법무법인의 운영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면이 강하다) 등이 있다.

25) 사법연수원, '2001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2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1, 5면 이하.

처음부터 변호사 활동 경력자 1명, 사법시험 5회부터 23회까지 분포, 연수원 출강경력 1-4년으로 다양함)

② 28-30기 변호사 진출자 간담회 의견(2001. 7. 5. 실시)²⁶⁾

③ 변호사실무교육 개선방안²⁷⁾

26)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겁을 먹은 상태로 자신감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상황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
 - o 기초적인 실무요령을 다룬 “**실무편람**”과 같은 안내서가 필요하다.
 - o **한 사건으로 소송의 전 과정을 다루는 내용 필요하다.**
 - o 반원을 팀으로 나누어 역할을 순차 바꿔 맡게 하고 한 사건을 실체의 진행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대처하는 방법의 실습이 필요하다.
 - o 선배 변호사들의 실패담을 수집한 강의가 필요하다.
 - o 변호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태도에 대한 사례를 알 수 있도록 판사, 검사가 보는 시각에 대하여 알았으면 한다.
- 변호사교육진출 확정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o 입소시 진로확정자는 처음부터 1,2개 반을 편성하여 변호사전문교육을 하도록 실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o 2년차부터, 적어도 4학기부터는 **변호사실무교육으로 전문화**가 필요함: 변호사 과목을 입증전략, 조정기법, 자문,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접견, 양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로펌과 전문기관에 파견하여 체험을 다양화하였으면 한다.
 - o 진로확정자에게는 4학기 시험이 불필요하므로 분리평가가 바람직하다.
- 민사의 경우
 - o **소송외적인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처리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o 모범사례에 대한 다양한 **입증(증명)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 o 보전소송, 강제집행분야에 대한 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집행현장에 대한 참관이 필요하다.
- 형사의 경우
 - o 양형기준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며 구체적인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교육을 해 주었으면 한다.
 - o 경찰 신문시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참여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면 한다.
 - o 검사에게 어느 선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실무수습
 - o 시기를 조정하여 1,2월 보다 5,6월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전문분야수습도 영역의 확대나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같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
 - o 수습처의 수용시설을 고려하여 실무수습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
 - o 수습처에 상담, 조정, 법정 등 현장참여기회를 주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소송복대리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기타
 - o 회계학 강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스스로 부가세, 소득세 정도의 세무신고는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o 영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o 개인자격보다 연수원이 주관하여 외국에 나갈 기회를 확대하였으면 하고 학회들에도 비회원인 연수원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주었으면 한다.
 - o 특별법 분야는 관련분야 진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개발 분야에 대한 교재를 개발하였으면 한다.
 - o 여러 과목에 대한 수강이 가능하도록 전문과목의 시간 중복의 문제를 해소했으면 한다.

- 교육체제의 2원화

4학기 기본실무과목 중 민·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과목을 선택과목화하고 대체과목으로 변호사실무에 관한 과목인 변호사 실무Ⅱ을 편성하여 강의와 평가를 이원화; 이에 대하여 재판실무나 검찰실무에서의 기록 분석능력이나 법률지식은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소송사건의 처리 및 소송활동에도 도움이 되므로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다. 이원화 후 임용을 희망하여 재판실무와 검찰실무를 모두 수강하였으나 임용이 되지 못하여 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 변호사실무Ⅱ를 수강하지 못하여 균등한 수강기회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²⁸⁾ 교육체제의 2원화는 연수원 교육시스템의 근본적인 변경을 요하는 제도이므로²⁹⁾ 주 임용기관인 대법원,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변호사 진출확정자에 대한 변호사 실무 강의의 부족은 변호사실무수습의 내실화와 진로안내를 통한 특강³⁰⁾ 등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여전

27) 사법연수원, '2001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2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1, 315-326면.

28) 그러나 이 경우는 임용을 희망하였으나 성적이 좋지 못하여 임용이 되지 못한 것이고 본인이 그 트랙을 선택한 것이므로 균등한 수강기회를 침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 한다.

29) 판사, 검사의 육성이라는 사법연수원 원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시스템의 변경이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30) 참고자료: 2001년 실무수습연수생에 대한 서울지방 변호사회 종합강의 일정표

서울지방변호사회 종합강의 일정표

강의 일자	강의 시간	제목	강사
제1일	10:00 ~ 10:20	부임식	
	10:20 ~ 11:20	변호사의 직업윤리	우정권 부회장
	13:30 ~ 15:00	노동사건 처리요령	장원찬 변호사
	15:20 ~ 16:50	교통·산재사건의 처리 실무	박영립 변호사
제2일	10:00 ~ 11:30	증권거래법 실무	임재연 변호사
	13:30 ~ 15:00	형사변호의 실무	백형구 변호사
	15:20 ~ 16:50	법률의견서 작성실무	이재후 변호사
제3일	10:00 ~ 11:30	보전소송실무(가압류·가처분)	구도일 변호사
	13:30 ~ 15:00	증인신문과 서증제출요령	이기현 변호사
	15:20 ~ 16:50	간담회	황계룡 변호사

히 적지 않다.

- 청사이전 후의 강의방식
 - 반편성 및 강의방식은 다음과 같다.

14개 반에 대하여 14명의 교수가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한 후 강의합의를 거쳐 단 한 차례 강의하는 방식에 대한 비효율적인 면의 개선필요성³¹⁾은 다른 기본실무과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실무과목의 경우는 다른 기본실무과목과 달리 연수원 교수가 과목당 1명에 불과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전임교수 담당반과 변호사 강사 담당반 사이의 형평성 문제, 변호사 강사들 간의 강의의 균질성을 확보³²⁾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제4일	10:00 ~ 11:30	가사소송실무	박희수 변호사
	13:30 ~ 15:00	변호사사무소 운영요령	배진수 변호사
	15:20 ~ 16:50	행정소송의 처리	김종철 변호사
제5일	15:00 ~ 15:40	종합평가회	

31) 사법연수원 강의는 모든 반에 균질화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동일한 여건 하에서 평가시험(판사, 검사 임용에 결정적인 등수나 성적 부여용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균질적인 관료를 양성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법적인 판단은 대부분 판사나 검사의 개성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거의 동일한 논리 과정을 거쳐 결론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 법적 안정성이 고도로 강조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교육시스템은 판사, 검사와 같은 관료의 양성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을 특정 법적 관점에서 자유롭게 재구성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변호사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균질의 관료적 사법시스템의 기반과는 배치되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 당사자주도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사건을 구성하고 풀어 나가면 법관은 그 한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변론주의를 취하는 한도에 있어서 변호사는 사건을 주도하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기존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은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거의 고려하지 않아 변호사실무교육은 판사나 검사를 위한 교육의 부수적인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선에 머물러 있었다.

32) 변호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균질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장점으로 수용하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실제 개업하는 변호사가 개성과 능력과 보수면에서 천차만별인데 이들 모두를 변호사라는 동일 테두리에 놓고 비교하고자 하는 시도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한다. 또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변호사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건진행과 대처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연수원이므로 동일한 강의를 요청하는 것은 변호사교육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는 상황에서 행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기 쉬운 문제점도 있다.

연수원에서는 변호사 강사의 균질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강사의 수를 줄이고 합반강의를 하거나 화상강의를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³³⁾

- 교육내용의 다양화

- 충분한 변호사실무교육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④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응답

- 전임교수의 확보와 교재 및 기록의 재편이 필요하다.

◦ 강의의 평가와 균질성 확보, 평가의 예측성 증대, 문제 확보, 채점의 객관화 등은 완료, 추진, 진행 중이다.

- 교과내용과 교육방법의 개선

- 현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파악된다.
- 윤리교육, 다각적인 분쟁해결교육, 다양한 증명활동이 필요하다.
- 사례연구와 사건에 대한 접근방법과 판단능력이 필요하다.
- 교과내용의 중복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 변호사 실무교육의 증가 여부

◦ 변호사실무 교육시간의 절대량 증가를 요하는 부분은 **변호사실무 교수인력의 확보와 여타 기본실무과목과의 편제 변경 등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인 과제로 보류한다.**

◦ 학점의 증가, 교과내용의 다양화 및 실무수습기록 작성시간의 증가문제 등은 **교육체제의 2원화로 대처한다.**

◦ 외국어교육의 강화, 재판실무와 변호사실무의 통합, 민·형사변호사실무의 통합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다.

- 실무수습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 **변협과의 상시협의기구 개설이 필요하다.**

◦ **지도변호사의 선정, 수습상황의 점검확인, 수습결과물의 제출, 국선변호수습의 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33) 그러나 이러한 합반강의나 화상강의는 강의자체의 부담만 줄일 뿐 실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채점이나 연수원생들의 다양한 강의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반대방향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다.

- 교육체계의 2원화가 필요하다.

◦ 2원화의 기본개념: 4학기 기본실무과목 중 민·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과목의 선택과목화, 대체과목은 변호사실무에 관한 과목인 변호사실무 II 편성, 평가의 2원화로 선택과목 선택자와 미선택자 별도 평가한다.

◦ 현 교육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효율의 원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전환의 시기는 입소시, 1년 교육종료 후, 4학기부터 등 3개 의견 있음, 현행체제의 변경 폭과 파급효과 최소화를 고려하여 진로확정시기인 4학기 개시 전(희망하는 견해가 46%)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전환의 효과: 교육체계를 2원화하면 변호사 총 교육시간 104시간의 70%인 74시간이 증가할 수 있음, 교과목의 다양화와 현재의 교육 불만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음, 변호사 진로 확정자에 대한 평가방법을 P/F로 전환할 수 있으며³⁴⁾ 이들에 대해서는 석차를 내지 않게 되므로 패배의식 또는 낙오의식을 갖고 출발하는 부작용도 개선될 것이다.

◦ 전환의 문제점: 국가예산으로 변호사교육을 한다는 명분상의 문제가 생김,³⁵⁾ 로스쿨제도와 관련하여 변호사진출자에 대한 급여환수문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별도로 대처할 문제로 보인다. 교육시간의 증가에 따르는 교수인력확보는 잠정적으로 전임교수 증가와 외부강사의 동원으로 대처할 것이다.³⁶⁾ 개선요구사항에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 있는 교과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연수원생들이 연수원의 교육에 태만히 임할 우려가 있으나 변호사로 개업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최소한의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F학점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 강의요원의 확대 및 화상강의방식 도입 여부

(총 13과목 19시간; 윤리교육 1시간 외 1.5시간)

34) 재판실무 및 검찰실무 선택자의 평가는 종전대로 하고 임용기관의 요구에 따라 선택자군 내의 석차를 산정해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변호사실무 II 선택자는 석차를 폐지한다.

35) 국가예산으로 변호사교육을 한다는 비판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방법론을 바꾸는 것과 상관없이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고 판사, 검사 선발을 위한 교육만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생의 70-80%가 변호사로 바로 진출하는 한 이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36) 수차례의 반복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교수의 인력확보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강사확보에 다소의 어려움 예상되나 교육체계의 2원화가 실현되면 약간의 부담완화는 예상된다.
- 필요한 변호사강사는 대한변협을 통하여 확보를 추진한다.
- 화상강의의 도입필요성은 여타 기본실무과목과 동일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이지 변호사 실무강사 인력의 확보차원에서 검토할 것은 아님. 다만 출강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론 강의 및 강평 분야에서 주임강사에 의한 화상강의의 도입필요성이 크다.
- 그 외 실제의 상담, 자문, 접견 등에 관한 비디오, 실제 재판진행과정의 비디오 등의 제작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한 교육효과는 매우 클 것이나 피사 대상의 프라이버시 등 문제로 제작에 어려운 점이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 2002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2003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³⁷⁾

① 변호사 실무 전담교수의 증원

- 변호사 실무과목 교육의 현황

◦ 33기 연수생에 대하여 민·형사 모두 1학기에 교재강의를 5회(10시간), 기록작성과 강평 각 2회, 2학기에 기록작성과 강평 각 4회 시행(강의시간은 1학기 24시간, 2학기 31시간)을 시행할 예정이다. 32기 4학기에 대하여는 민·형사 모두 기록작성과 강평 각 1회(합계 10시간) 시행 후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민·형사 변호사실무과목의 교육시간이 2000년에 비하여 민·형사 각 13시간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강의자료는 기본 교재 4종 외에 기록 작성시마다 강의보조 교재(실무수습 기록과 모범답안 및 강평)를 준비하여 사용하며 그 외 평가를 위한 문제와 기록, 모범답안과 채점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 강의의 준비는 민·형사 각 1인의 전담교수가 전담하고 외래강사(민·형사 각 15인)아 전담교수가 각 1개(총 16개 반)의 강의와 강평을 담당하여 시행

37) 사법연수원, '2002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3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2, 34-39, 261-269면.

하고 있다. 그러나 외래강사에게는 강의와 강평, 작성 문서의 첨삭지도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하여 그 외의 다른 교육상 조력은 요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 전담교수 증원의 필요성과 증원의 규모

◦ 이처럼 **외래교수**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민·형사 각 1인의 전담교수가 모든 강의교재와 보조교재를 준비하고 평가방향의 결정과 그 준비 및 시행까지 전담하고 있어 **현재의 전담교수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³⁸⁾

◦ 또한 위와 같이 수업준비, 교재개발 및 평가의 전 과정에 과목별 전담교수 1인만이 관여하게 되어 전담교수시각의 편향가능성과 오류의 발생가능성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고 교정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앞으로 변호사 실무교육시간의 증대와 내용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연수제도가 개편될 것인데 전담교수 1인체제로는 여력이 없어 변호사 중심교육의 준비를 위한 교재 개편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다.

◦ 이러한 증원의 필요성과 예산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적어도 **민·형사 각 2인을 증원하여 민·형사 각 3인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민·형사 각 1인씩의 증원이라도 필요한 실정이다.

- 전담교수 증원 방안

◦ 사법연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판사·검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강의 인력은 전임교수, 초빙교수, 강사가 있다.³⁹⁾ 따라서 일정

38) 이 부분에 대한 연수원 교수들의 의견을 살펴 보면, 강사 형식의 외부 변호사 교수들은 강의를 위해서만 협조를 겨우 구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평가나 교육의 계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평면적으로만 보면 이는 변호사교수들이 시간강사의 지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면 판사출신 연수원 교수들에게 연수원에서의 교육의 후의 승진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비해 외부의 변호사들에게 연수원 강의는 변호사업과의 연관성도 크다고 할 수 없으면서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는 데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연수원이라는 동일 공간에서 교육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판사와 변호사들은 교육에 참가하는 취지나 목적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은 연수원에 출강하는 지위 이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39) 법원조직법 제73조, 제74조의 2, 3,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정도의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전담교수로 확보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구분	내용	검토
제1안	판사로 임용하여 전담교수로 의무 복무하도록 함	정식 판사로 임명되므로 지원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담교수로만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음
제2안	전임교수로 임용(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교수회심의를 거쳐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함, 정년 및 징계 등은 판사에 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임기가 10년이므로 지원자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임기가 10년이나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임기를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검증기간을 정하는 경우 지위불안으로 인하여 지원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증 없이 법관 같은 임기 및 신분을 보장하는 셈이 됨
제3안	초빙교수로 채용(계약직 공무원으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법연수원장이 채용함)	장기의 계약기간으로 계약하지 않는 한 지원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연수원 입장에서의 검토의견

◦ 일단 지원자 확보의 차원에서는 1안이나 2안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나 변호사 실무교육을 전담하기 위하여 전담교수를 1안이나 2안에 의하여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변호사 실무교육만을 전담하게 하는 데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이 있다. 특히 임명된 전담교수가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 전담교수로서의 임용효과를 거둘 수 없고 전담교수를 장기간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실제 변호사의 실무와 유리되어 교육의 현장적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⁴⁰⁾

◦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초빙교수를 채용하여 2-3년간 전담교수로서 근무하게 하되 선임교수와 후임교수의 근무기간이 1년 정도 중복될 수 있도록 채용시기를 조정하는 형태로 초빙교수를 채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 제3안은 단기의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장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보수책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어서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지원자 확보대책으로 변호사협회를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로부터 소속변호사를 일정기간 연수원 교수로 근무하게 한 다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

◦ 다른 한편 초빙교수 계약시 변호사 업무를 일정 범위 내에서 겸임(兼任)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면 임기와 보수의 양 측면에서 모두 지원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초빙교수가 영리업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 대체로 겸임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규정⁴¹⁾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⁴²⁾에 의하여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방안은 활용할 수

40) 이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 실무교원은 임용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실무교원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당기간을 교육에만 종사할 경우 그 실무 감각이 현실과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

41) 제32조의3 (겸임)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학 교수 등 특정직공무원이나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특수 전문 분야의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42)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초빙교수의 임명권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이 초빙교수를 채용하는 절차이다.

② 연수원의 4학기 교육을 변호사 중심 교육으로 하는 대안에 대한 검토

- 4학기 교육의 2원화 방안

◦ 4학기 교육과정의 2원화 방안은 700명이 넘는 연수생이 변호사로 진출하게 되는 연수원의 실정을 감안하여 변호사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4학기 교육과정에 대하여 변호사로 진로를 확정한 연수생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4학기 기본실무과목 중 민·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대체과목으로 변호사실무에 관한 과목(가칭 **변호사 실무 II**)을 편성하여 강의하고 변호사로 진로를 확정한 연수원생들에 대한 평가방법은 Pass/Fail 방식으로 전환하고 변호사 진로 확정자에 대한 석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강의와 평가를 이원화하자는 방안이 2001년 교수세미나에서 제시되었다.

◦ 그러나 2002년 연수원 교수세미나에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연수원교육체제상 4학기 평가 이전의 변호사 교육은 1개월 정도로 대부분 기록작성과 사례연구를 위한 시간이고 교육시간도 32기 연수생의 교육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집에서 작성해 오는 것으로 편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교육기간이 짧고 4학기 평가를 위한 모의기록작성위주의 교육이므로 추가적인 강의를 위해서는 시설 및 교수인력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또한 재판실무와 검찰실무과목의 수강시 습득하게 되는 기록분석능력이나 법률지식은 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소송사건의 처리 및 소송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그 교육내용을 판검사양성을 위한 내용에서 변호사 내지는 법조 공통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개편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다른 한편으로는 4학기 기본실무과목 중 민·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대체과목으로 변호사실무에 관한 과목(가칭 변호사 실무 II)을 편성하여 강의하는 것은 내실 있는 교육보다 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과목의 4학기 시험부담을 면제해주는 결과만 초래하고 부실화된 법원, 변호사 실무수습 및 전문기관 실무수습과 더불어 변호사로 진출할 연수원생들의 기본적인 실무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임관을 결정하는데 4학기 시험의 비중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임관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연수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32기 연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재판실무과목, 검찰실무과목을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38%였고 임용을 희망하지는 않아도 그 과목들을 선택하겠다는 학생이 20%였다. 이에 비해 변호사실무 II를 선택하겠다는 학생은 16%에 지나지 않아 임용대상자와 변호사진출자로 구분하는 2원화 방안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⁴³⁾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직역별 분리연수”의 방안이 채택되지 않는 한 4학기 교육과정의 2원화는 채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 의견이

43) 이 부분은 우리 연수원이 내재하고 있는 관료양성제도 또는 관료선발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연수생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와중에도 연수원의 핵심적인 기능은 판사, 검사로 대별되는 관료선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내심 임용을 원하지만 성적 때문에 임용될 가능성이 적은 관검사분야에 대한 기대를 사전에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렵다. 또한 임용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교수요원(시간강사와 비슷한 지위의 외부강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전문성도 신뢰가 가지 않는 변호사를 위한 과목이라는 점에서 대안 역시 그리 훌륭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조건하에서는 대다수의 연수생들이 임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관검사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선호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임용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는데 임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시간을 낭비하였다거나 불이익이 생길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탈락형관료선발 과정에 연수원생들 모두가 참가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서열화 되는 공통과정을 거친 것은 변호사의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되는 소송실무의 발전에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 요인이 아닌가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출신 변호사, 처음부터 변호사로 출발한 변호사로 구분되는 최종과정이 연수원의 시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구분(탈락 또는 선발)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처음부터 자신은 선망 받는 로펌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연수원의 판사, 변호사 실무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한 후 판사나 검사로 충분히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펌을 선택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성적을 통하여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연수원의 교육시스템 하에서 연수원생들의 희망이나 적성에 따른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립되었다.

- 변호사 중심교육을 위한 특강강좌 신규개설

◦ 4학기 특강 강좌의 운영현황

4학기 특강 강좌는 4회 8시간에 걸쳐 행해지는 ① 기업회계특강, ② 의료과오 소송, 유전자감식, 자산유동화의 2가지 강좌로 구성되어 있다. 연수생들은 이 중 1개의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강강좌만으로 변호사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변호사 중심교육을 위한 새로운 내용의 특강강좌의 개설이 요청되므로 개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 과학수사론 또는 법의학과목의 특강개설

31기까지는 법의학 분야만이 1학기 특강형태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전체연수생을 상대로 강의되어 오다가 32기부터는 형사법계열법의 전공선택과목(1학기 2학점)으로 개설되어 전공선택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법의학, 유전자감식, 이화학감정, 거짓말탐지기, 교통사고분석 등을 내용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수 및 연수생들은 이 과목은 형사증거법과 마찬가지로 연수생들 전원이 수강할 필요성이 있는 각 직역에 공통되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일반법과목으로 전환하여 전체 연수생으로 하여금 강의를 듣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1,2학기의 강의시간부족과 형사법계열의 1학기과목의 부족, 4학기 교육방안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4학기 특강강좌의 형태로 개설하여 과학수사론을 수강하지 않은 연수생들로 하여금 이를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 상담술, 변론술, 협상술에 관한 특강 강좌

2001년 연수원 교수세미나에서 변호사 중심교육의 일환으로 **상담술, 변론술, 협상술**에 대하나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현재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교재개발에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당장의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기는 어렵다. 다만 특강 강좌의 개설을 통한 강연방식의 교

육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을 초빙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4학기 수료시험 후 이들 과목에 대한 특강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3기 연수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변호사실무과목의 강의 내용을 **상담기술, 협상기술, 법률자문, 변호사사무실 경영방법**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77.7%에 이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변호사로서의 활동에 따른 특강강좌

법조책임론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종래 법조책임론의 일부로서 강의되던 변호사 보수와 광고 I II뿐만 아니라 변호사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변호사 사무실 준비와 운영, 변호사의 세무신고,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일련의 주제를 묶은 특강 강좌의 개설이 요청된다. 이들 과목이 전체 연수생에게 필요하다면 공통 특강강좌로 개설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신규특강강좌 개설에 따른 대책

법조책임론이 폐지되고 4학기의 대법원 및 대검찰청에 대한 견학 일정이 폐지된다면 신규 특강강좌 개설에 따른 강의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특강 강좌의 성격상 대강당, 소강당 또는 대강의실을 이용하여 주로 외부강사에 의하여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강의시설 및 교수인력 운영 면에서도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개설된 특강강좌를 연수생들이 2강좌 이상 선택수강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강 강좌를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시간표 구성상 어려운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개설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고 특강강좌로 개설되지 못한 부분은 전체 연수생을 상대로 한 특강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다.

연수생들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기능카드를 이용한 출석체크가 가능하므로 연수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모의재판의 증편 시행 방안

◦ 모의재판은 소송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법정에서의 소송절차 진행의 순서에 대한 이해 및 법정에서의 소송지휘나 증인신문기술

을 습득할 수 있다. 이는 연수생들이 실제 소송절차와 변론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효용이 적지 않다.

- 이를 위하여 2학기 초반에 각 반별로 민사, 형사 각 1회씩만 실시하던 모의 재판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4학기로 옮겨 연수생 전원이 모의재판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⁴⁴⁾ 4학기에 모의 재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경우 수료를 앞두고 대체로 정해진 희망진로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도록 할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교육효과가 큰 재판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실은 교수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는 것을 근거로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4학기 추가실시여부에 대하여 모의재판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기로 하였다.

- 제도개선위원회 역시 현행대로 실시하되 그 방식은 좀 더 개방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각 교수실별로 모의재판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02년도 2학기 **민사모의재판**에서는 정해진 사안에 기초하여 준비서면과 증인신문사항을 반별로 독창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개방형 운영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주어진 기본틀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에 향후에는 **경연(competition) 방식의 도입여부나 재판부의 별도구성(예컨대 전현직 연수원 교수로 재판부 구성) 여부, 사안제시의 범위, 증인의 구성 및 답변의 범위 등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③ 연수원의 변호사실무수습 내실화 방안(전문분야실무수습 포함)

- 전문분야 실무수습 및 변호사 실무수습 범위의 확대(교수세미나 발표자 제안요지)

- 연수생 1000명 시대에 송무변호사는 변호사가 종사하여야 할 직역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앞으로는 변호사가 그동안 법무사가 행해 온 경매, 등기, 신청

44) 사법연수원, 2003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2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3, 262-263면.

업무는 물론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관련 직역 및 경찰,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한 행정부 및 일반 사기업체 또는 단체의 법무영역에도 진출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관념 아래 전문분야 중 하나로 법원, 검찰, 송무변호사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변호사 실무수습기간 중에는 송무 이외의 타 분야도 변호사실무수습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변호사실무수습과 전문분야실무수습 간에 상호 대체수습을 인정하는 방안을 2004년도 34기부터 시행추진; 다만 연수원 수료시험 준비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기관을 선택하는 편법이나 전문분야기관에서의 불성실한 수습으로 연수생들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시험준비에 유리하도록 변호사실무수습기간을 직역별 수습기간 중 제일 뒤에 오는 것으로 배치하고 그 기간에 시험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⁴⁵⁾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수습을 받고자 하는 연수생은 수습계획서, 당해 기관의 동의서(아그레망),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기획교수실의 방안 외에 변호사실무수습과 전문분야실무수습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직역별 수습기관과 전문분야실무수습기간을 합한 7개월을 법원 실무수습, 검찰실무수습, 변호사실무수습으로 2개월 10일씩 순환하여 시행⁴⁶⁾하자는 것이다. 이 기간에는 전통적인 송무변호사실무수습이 아닌 전문분야실무수습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 전문분야기관은 충실한 실무수습이 가능한 곳으로 한정하여 대폭 축소조정하고 연수생이 희망하면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제한적으로나마 변호사실무수습기관과 전문분야실

45) 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 임용이 연수생들 간의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로 임용되는 연수생들과 그렇지 않은 연수생들에게 미칠 직간접의 영향까지 생각하면 이렇듯 철두철미한 점수에 의한 방식은 판검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형식적 평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성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46) 4학기 시작 전까지 8개월 간 2개월 20일씩 순환하여 시행하자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4학기 시작 전 1개월간 자율학습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수료시험준비와 관련하여 실무수습조 편성상의 형평문제가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앞의 2003년 교수세미나, 265면.

무수습을 연이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개월간의 전문분야실무수습을 할 수 있어 전문분야 인턴제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실무수습 신청자에게 수습기관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등 엄격하고 번거로운 요건을 가하는 것은 모처럼 전문분야실무수습을 권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지도교수의 승인만으로도 부실수습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⁴⁷⁾

또 다른 단점으로는 특정기관의 전문수습은 기관 사정상 전체 실무수습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가능한데 이 때문에 기간 선택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습 일정이 빠듯한 검찰실무수습이 끝으로 되어 있는 연수생들이 전문분야수습을 이유로 실무수습조의 변경을 구하는 편법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실무수습배정절차가 번잡하여질 우려가 있다. 또한 대체된 전문분야수습이 2개월 남짓하여 전문분야기관, 연수생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은 인턴기간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 정도의 짧은 기간에 해당하는 수습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문기관이 적어 기관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 실무수습에 등급별 평가의 도입

◦ 직역별 실무수습의 경우에도 전문분야실무수습처럼 일부 학점에 대하여 기획총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등급평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평가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평가의 객관화

◦ 2002. 11. 20 제정된 법원·검찰·변호사 실무수습평가지침02-3에서는 평가요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계량화할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획총괄 교수가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부”평가가 내려질 경우 수료시기의 지연은 물론 판검사 임용 등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회복할 별도의 트랙이 없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

47) 실무수습기간 중 마지막 1개월 중에 전문분야실무수습기간을 배치하는 이상 현재의 부실한 전문분야 실무수습 운영을 막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전문분야실무수습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주요 원인은 1개월간 일률적으로 전문분야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으므로 희망자만 전문분야수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연수원의 전문화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성이 높다. 예를 들어 지도관 의견 30점, 출근상황 30-점, 수습실적 40점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 임용기관에 대한 의견서 송부

◦ 실무수습의 결과가 임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원의 경우도 검찰의 경우와 같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에 지도관의 평가서를 송부하도록 대법원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연수생 중 법원을 지망하는 연수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식으로 자세하게 평가하여 송부하도록 할 경우 그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법원 실무수습의 관리 강화

◦ 현재 부임신고 후 실무수습 담당 법원이 “종합계획서”를 연수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수습인원만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으므로 실무수습지로 연수생을 파견하기 이전에 계획서를 송부 받아 연수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다만, 각급 법원 특히 소규모의 법원에서 실무수습종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업무량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사) 2004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2005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⁴⁸⁾

2002년 연수제도 개선방안 이후 변호사실무개선방안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고 개별 분야별로 논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2004년 연수원 교수세미나에서 나온 개선방안 중 변호사실무분야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① 기본실무과목 교과과정의 개선방안

- 사실인정론 교육의 강화

실무에서는 사실인정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사실인정론”의 부분으로 교과과정중의 일부로 편입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교수실에서는 2005년 1학기 교재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중한 죄명의 부인사건을 중

48) 사법연수원, '2004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5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4, 347-363면.

점적으로 다룬 사실인정론 강의교재를 편찬할 계획이다.

- 공동강의 방식의 도입

법적분석·구성능력, 사실인정능력 등 범용적 실무능력의 배양에 절차법·증거법, 정상입증(정상증거의 수집·입증과 구형)을 주제로 하는 문제연구 등 기본실무과목과 공통적 관련성이 있는 강의는 협력하여 공동으로 강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시청각교재 및 다양한 강의교재 개발

법정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수생에게 변호사에게 필수적인 증인신문기술 등을 강의하고 상담기술, 구술변론과 소송지휘 등의 교육을 녹화된 비디오로 보게 하는 시청각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 4학년 모의재판의 실시

연수생들이 실제 소송절차와 변론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재판을 4학기 수료시험 후 진로안내주간에 증편하여 시행하자는 안이 제안된다.

이에 대하여 기획교수실은 사전에 준비된 대본을 읽는 수준의 모의재판은 소송법에 따른 재판절차의 전체적 흐름을 교육하는 효과는 있으나 법정에서의 구술변론 및 증인신문기술, 재판장의 소송지휘 등의 배양에는 부적합하므로 지양하였으면 하는 의견이었다. 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중요한 시기인 4학기에 연수생 전원이 참석하는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

- 기본실무교재의 입소 전 배부

연수원입소전에 기본실무과목을 소개하는 기회에 기본실무교재와 실체법 지식을 배양하기 위한 사례집 등을 배포하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연수원 전체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배포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② 민사재판실무

- 민사소송실무교재의 편찬

주교재인 민사실무 II의 내용이 판결서 작성요령과 기재례 위주로 서술되어 있어 민사절차법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범용적 실무능력의 배양에 필요한 교재

를 편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선 2005년 1학기에 민사소송절차론, 요건사실론 부분을 이러한 형태로 우선 발간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원칙적으로 민사재판교수실의 자율에 맡기고 추진경과를 지켜보며 논의하기로 한다.

- 사례연구방식의 강화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소송 등과 같이 실무상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에 따라 요건사실과 전형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증거의 수집과 조사방법,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을 분쟁의 시작에서부터 해결까지 절차단계별로 강의하는 사건유형별 사례연구에 의한 집중형 교육방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안됨. 원칙적으로 민사재판교수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추진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것이 제도개선위원회의 심의결과이다.

③ 형사재판 실무

절차법교육의 강화 및 사실인정능력 등 범용 실무능력배양차원에서 형사재판 실무1(소송절차론), 2(증거법과 사실인정론), 3(형사판결서작성실무)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교수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추진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다.

④ 검찰실무

수사절차론의 교재를 기본적사항만 수록하고 강의도 연수원 수준에 맞도록 재조정 필요하다. 검찰교수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추진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다.

⑤ 민사변호사 실무

- 민사재판실무 과목과의 연계교육을 위한 수습기록의 개편이 필요하다.

◦ 제안요지

연수생들이 수료 후 연수원에서 습득한 실체법적·절차법적 지식 및 각종 법률문서작성기법만으로도 변호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종래 주로 법률적쟁점의 해결을 주안점으로 하던 기록을 사실관계까지 추출하고 증명하는 내용

의 기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 구체적인 실현방안

의뢰인이 제출하는 기초적인 서류와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만 기재한 상담기록을 제시하고, 그 입장에서 보전처분신청서, 소장 등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후 각 절차진행단계에 따라 필요한 각종 법률서면을 작성하게 하는 방안,

소송기록 전체를 제공하고, 특정 시점에서 어느 쪽 당사자가 어떤 내용의 소송행위(서면 제출, 증거신청 및 증거신청서 제출 등)를 해야 하는 지 훈련시키는 방안,

대체로 첫 번째 방안과 같으나 **소송상 필요할 지 여부가 불분명한 여러 가지 소송서류를 모두 제시**하고 의뢰인의 불편사항만 제시한 후 변호사의 입장에서 어떤 해결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부터 연수생이 선택하고 필요한 법적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 검토의견

민사변호사실무와 민사재판실무 과목의 연계교육은 어떤 방안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외형적인 강의의 통합은 오히려 연수생이나 교수 모두에게 혼란을 주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록작성 내지 절차진행면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소송 전체과정과 절차단계별 적절한 소송행위를 이해하는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도개선위 검토결과

원칙적으로 민사변호사교수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추진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한다.

⑥ 변호사 실무수습의 충실화

- **합동실무수습의 개선이 필요하다.**

◦ 제안요지

지금까지는 전국 변호사회 중에서 서울지방변호사만이 실시하는 집합교육방식의 통합교육을 전국 고등법원 설치지역의 지방변호사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거나 아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관 하에 2개월마다 통합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34기 연수생을 상대로 설문조사결과 통합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35기부터 실시한다.

- 제도개선위 심의결과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자체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업무협조를 구한다. 다만 전체 연수생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통합교육은 지방에서 수습하는 연수생의 불편을 감안하여 채택하지 않고 차선택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통합교육교재를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 지도관 변호사 선정기준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 제안요지

대부분의 지방변호사회에는 지도관변호사 선정 및 연수생 배정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충실한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전조치로서 지도관 변호사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변협과 협의를 거쳐 가능하면 35기 실무수습부터 실시한다. 지역실정의 차이로 통일적으로 산정기준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하여 변호사의 경력, 물적 공간과 설비, 수임사건의 종류 등에 관한 지도관 변호사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지도관을 선정하도록 권고·유도할 필요가 있다.

- 제도개선위의 심의결과

기획교수실 의견대로 처리한다.

지도관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지도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무수습지도의 공익활동 인정, 지도관 변호사에 대한 감사장 증정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고 변협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촉구한다.

- 변호사실무편람의 발간

- 제안요지

연수원 수료 후 개업 준비 및 사무실 운영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유형의 현실문제에 대응하려면 일반 개업변호사로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표준적 업무내용을 수록한 변호사실무편람을 발간할 필요가 있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장기과제로 추진하되 주기적으로 그 진척상황을 점검한다. 변호사실무편람은 책자의 성격과 발간작업에 역량있는 다수의 변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변협과 공동으로 발간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협력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면 변호사실무(일반)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개편하는 방식으로 교재개편작업을 추진한다.

◦ 제도개선위 심의결과

기획교수실과 변호사교수실이 협력하여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직역으로 진출할 경우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편람을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변호사직무대리자격의 부여와 그 전 단계로서의 동석수습(同席修習) 방안

◦ 제안요지

연수생에게 변호사실무수습기간 중에 지도관변호사이 지도·감독 및 동석과 사건외뢰인의 사전 양해 하에 다양한 변호사직무활동을 수행하게 하자는 의견이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동석수습방안은 연수생에게 수습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고 지도관변호사도 연수생을 직접 자신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변호사직무대리자격의 부여방안은 변호사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장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석수습방안에 관한 내용을 실수수습지도안내 책자에 포함시키고 사전에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그 소속변호사들에게 주지를 시킴으로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제도개선위원회 심의결과

기획교수실 의견대로 처리한다.

- 실무수습지도의 공익활동 인정 추진

◦ 제안요지

변호사실무수습지도는 대한변협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의 규정상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공익활동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공익활동으로 인정받는다면 공익활동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지도관 변호사에게 현재보다 성의 있는 실무수습지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채택시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산하 공익활동심사위원회에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제도개선위 심의결과

기획교수실 의견대로 처리한다.

⑦ 전문분야 실무수습의 개선

◦ 변호사실무수습과 상호 대체수습을 허용하여 선택형 실무수습으로 한다.

◦ 제안요지

변호사실무수습과 전문분야실무수습의 상호 대체수습을 허용하여 어느 한 실무수습분야에 관한 집중 연수를 통하여 전문지식을 체득하고 어느 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보다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34기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35기 실무수습부터 실시한다.

◦ 제도개선위 심의결과

현행 평면적 대체수습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허·조세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법무법인을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아) 2005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2006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⁴⁹⁾

2002년 연수제도 개선방안 이후 변호사실무개선방안은 큰 틀에서의 변화는

49) 사법연수원, '2005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6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5, 면.

없고 개별 분야별로 논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2005년 연수원 교수세미나에서 나온 개선방안 중 변호사실무분야와 관련되는 부분만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① 영어구사능력의 수료 요건으로

◦ 제안이유

45회 사법시험부터 일정점수 이상의 토플 성적을 요구하고 있어 연수원생은 전원 일정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영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시켜 수료시 일정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제안되었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2006년 37기부터 교수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도개선위 심의결과

다른 외국어 선택기회를 배제하는 근거가 확인하지 않고 교육과정도 없이 평가를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보다 심도 있는 추가검토를 위하여 연수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한다.

② 전문분야실무수습기간 변경

◦ 제안이유

수습이 4학기 시험에 임박한 7월에 실시됨으로써 연수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고 자신의 건공계열과 관련이 있거나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보다는 의무출석률이 적고 수습에 대한 통제가 약한 기관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있다. 심지어는 연수생들이 수습기관의 충실한 연수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수습기간을 2학기 말(1월)이나 4학기 평가시험이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기획교수실 검토의견

2학기 말로 변경하는 경우 대상기관이 신입사원 선발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일 것으로 예상되어 대상기관이 이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학기 이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수생들의 참여도가 현재보다 더 떨어질 가

능성도 있다. 또한 해외연수기간과 겹쳐 해외연수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도 있다.

제안이유상의 문제점 정도는 수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법연수생수습평정표'에 나타난 출근상황, 근무태도, 참여도 등을 기초로 엄정한 평가를 하고 이를 위하여 수습기관에도 엄정한 평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연수생들에게도 엄정한 평가방침을 주지시키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 외 변호사교수들에게 연 1회 정도의 수업참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제도개선위의 심의결과

기획교수실 의견대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참관수업을 어느 학기에 배정할 것인지, 수업시간표상 학기 초에 배정할 지 여부는 법조윤리교수실과 변호사교수실이 협의하여 추후 정한다.

자) 2006년 연수원 교수세미나;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⁵⁰⁾

①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부분적 통합

- 민사재판실무

기본교재로 민사실무 II; 대체로 판결서구성, 판결서 앞부분,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결서의 끝부분으로 구성된다.

1학기 강의는 민사재판절차 강의 2회(영상교육, 화상강의), 민사실무 II 강의 9회, 연습 3회(법정지상권 연습, 주문 연습, 자백간주판결), 사례연구 2회(요건사실론, 채권자대위소송), 기록 작성 및 강평 각 3회(물품대금 등, 건물철거 등, 이전등기말소 등, 민사변호사실무와 민사재판실무 연계), 평가로 이루어진다.

2학기 강의는 사례연구 3회(주택임대차보호법, 기판력, 채권자취소권), 민사재판절차연습 1회, 기록 작성 및 강평 4회(어음금 등 근저당말소(본소), 대여금(반소), 전부금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모의재판 1회, 평가로 이루어진다.

4학기는 기록 작성 및 강평 각 2회(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 민사재판절차), 민사절차 및 사실인정 연습 1회, 평가(다양한 유형의

50) 사법연수원, '2006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5, 면.

논점이 포함된 모의기록에 의한 완성된 판결문 작성문제 출제)로 구성된다.

- 민사변호사 실무

기본교재로 민사실무 I; 대체로 소송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소제기, 답변서, 반소, 소의변경, 준비서면, 증거의 신청, 변론기일, 상소심절차, 민사분쟁의 예방으로 구성된다.

1학기는 민사실무 I(교재강의 5회), 기록 작성 및 강평 각 2회(대여금 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의 소장·답변서·준비서면·보전처분신청서·증거신청서 등을 작성), 평가(사례 제시 후 소장 또는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각 항목 작성, 소송단계별로 변호사가 하여야 할 조치 등)로 구성되어 있다.

2학기는 증인신문기술 2회(증인신문의 기술 교재), 기록 작성 및 강평 각 4회(부당이득반환 등, 건물철거 등, 물품대금 등,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의 소장·답변서·준비서면·보전처분신청서 등 작성), 모의재판 1회, 평가(소장, 보전처분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기록 작성과 약술단답형 문제를 출제한다).

4학기는 기록 작성 및 강평 각 1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사건관련 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임의경매절차정지신청서·소변경신청서·준비서면 등 작성), 평가(소장, 보전처분신청서, 반소장 등 작성 문제 출제)로 구성된다.

- 두 과목에 대한 연수원의 자체 평가

민사재판실무는 기본교재나 강의가 외형은 판결서 작성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내용은 재판실무에 필요한 민사실체법, 절차법의 이론과 판례를 습득시키고, 사례연구, 절차연습, 기록 작성 과정을 통하여 사건해결능력과 소송 진행능력을 갖추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변호사실무는 변호사가 소송수행 중 직면하게 될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각종 서면의 작성능력을 함양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과목은 상호 연계된 기록 작성과 모의재판을 통하여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송단계별로 소송주체에게 요구되는 소송수행능력을 기르는 데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양 과목의 교과과정은 30년이 넘는 오랜 연구와 경험의 축적 및 실무 감각이

풍부한 교수진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연수원수료 후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도 큰 무리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⁵¹⁾로 내용이 알차고 강의방식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로스쿨(law school)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한다.⁵²⁾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사재판실무의 경우에는 판결서 작성방식 위주의 교육이라는 외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민사변호사실무의 경우에는 외래교수진의 출장으로 인하여 강의의 균질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 직역에 공통으로 필요한 실무지식교육이 교수실 사정 등 여러 가지사유로 민사재판실무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민사실무과목의 교육은 전체적으로 판사 중심의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사법연수원이 교육방침에 국제화와 전문화를 추가하면서 민사실무를 비롯한 기본실무과목에 배정되는 교육시간이 더욱 부족하여 교수와 연수생 모두 교과과정의 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양 과목의 통합방안 검토의 배경
 - 변호사 중심교육의 요청과 현실

재판실무와 변호사실무의 통합운영 여부에 대한 31기 연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00년 하반기 실시)에서 변호사 중심교육을 요구하는 연수생들의 요구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70% 이상이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음에도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여전히 변호사실무과목보다는 재판실무나 검찰실무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51) 여기에서의 실무는 기본적으로 판사 및 변호사의 실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곧 논의되는 내용을 보면 민사변호사 실무분야에 대해서는 강의의 균질성은 물론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2) 다만 이러한 우리 자신의 평가는 교육내용의 균질성이나 법적 안정성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한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며 자신의 방법으로 상대방과 논박을 하여 승리해야 하는 현실의 변호사에게도 이러한 방식의 교육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그 사건의 범위가 국내 사건의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 **판검사 중심의 교육**⁵³⁾

특히 실무과목의 학점배분비율이나 강의방법, 교수의 구성면에서 재판실무 및 검찰실무를 통하여 변호사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방식을 취하게 됨에 따라 연수생들은 연수원교육이 판검사 중심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32기-36기 사법연수생들에 대한 ‘지역별 교육시간 배정’과 관련한 설문조사결과 변호사실무관련 시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항상 4,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난다.⁵⁴⁾

53) 이에 대하여 애초부터 변호사진출을 희망하는 연수생이나 판검사 임용을 희망하였다가 성적이 미치지 못하여 변호사로 진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인 연수생들 상당수가 연수원 교육방식이 진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민사재판실무교육을 ‘판사양성을 위한 판결문 작성교육’이라고 선불리 단정 지어 생각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서는 그러한 생각의 근거에 연수원 내의 치열한 입관경쟁 분위기와 함께 ‘실력을 갖춘 변호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자 및 피교육자 상호간의 인식 부족 및 판사교육과 변호사교육을 준별하는 것처럼 분리되어 마련된 교재와 강의의 편성이 있었다고 지적한다(앞의 책, 53면).

그러나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실무와 변호사실무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둘은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같은 책, 55면). 이를 달리 민사재판실무는 양쪽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민사변호사는 의뢰인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같은 책, 61면).

54) 참고자료: 재판실무와 변호사실무의 통합운영 여부에 대한 31기 연수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00년 하반기 실시)

- 교수들이 판검사 교육을 우선하여 변호사중심교육으로 변화가 미흡하다.
- 변호사실무 시간 및 학점 증대, 실무기록작성 건수와 시간 증대가 필요하다.
 - 교재 및 기록 개편 필요, 전담교수 확보가 필요하다.
 - 강평이 무성의하다.
 - 현장실무중심교육 및 교과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 1+1(1년 교육 후 1년은 지역별 교육) 체제로 개편 필요하다.
- 민사재판실무와의 관계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

- 통합운영하고 변호사 업무사항은 특강형식으로 족하다는 견해(82명 중 32명)

이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혼란스럽다는 의견,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금과 같은 내용과 방식의 교육은 시간낭비라는 견해, 대부분의 변호사 강사들은 현실적으로 강의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변호사 작성의 서면 등을 법관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변호사의 업무는 시보기간을 활용하여 습득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견해, 원외 변호사강사에 의한 강의는 충실도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므로 민사재판실무와 공통되는 부분은 원내교수가 담당하고 실제 경험이 강조되는 부분은 원외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원외변호사의 실무 강의는 실효성이 매우 의심되므로 특강형식으로 충분하다는 의견, 변호사실무는 민사재판실무와 중복되며 변호사로부터 배울 것은 사무실 운영이나 경험담 같은 특수한 것에

국한된다는 견해, 변호사실무교육을 책으로 강의하는 방식 자체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 통합 운영이 재판 전체의 진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실체법적 지식을 쌓는 것이 연수과정에 중요하고 소송절차를 아는 것은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연수과정에서는 민사재판실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 과목의 유사성이 높고 체계적인 이론은 현재 민사재판실무 담당교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특수 분야에 관해서만 전문변호사의 경험담을 들음으로써 기초적인 실무의 분위기를 익히고 본격적인 변호사실무는 연수원에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힌 후 실무에 나가서 배우는 것이 순서라는 견해, 민사, 형사, 검찰, 강제집행,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연수원의 기본과목들은 법원이나 검찰로 진출하는 연수생들보다 오히려 변호사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에게 더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 민사재판실무를 배우면서도 그것이 변호사실무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는 점이 간과되어 별개의 과목으로 느껴지므로 한 과목으로 통합하고 각 논점마다 법원과 변호사의 입장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다.

- 통합하되 원내교수와 변호사강사 복수담당제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82명 중 19명)

이론이나 내용의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그 접근방법이나 강조점이 다르므로 변호사교수의 문제의식을 강의로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지만 민사변호사실무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소장이나 답변서 작성, 증거신청 등 민사재판실무와는 다른 기술이 요구되므로 이처럼 변호사실무에 고유한 부분은 원외변호사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통합이 타당은 하나 특강보다는 외부강사의 강의가 더 집중도가 높고 수업에도 내실이 있다는 견해, 민사변호사실무를 위한 지식은 민사재판실무나 보전소송 등 인접과목에서 습득되는 것이지만 민사변호사실무 과목에서 습득되지 않으므로 통합은 하되 특강형식은 형식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피하자는 견해가 있다.

- 현행대로 분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82명 중 20명)

별도로 운영은 계속하되 민사변호사실무교육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 판사교수가 변호사실무를 강의하면 관점이 달라질 것 같다는 의견, 같은 민사과목이므로 실체법적 이론과 소송법적 지식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의 구체적 모습은 구별되므로 개별강의에 의한 독자적인 강의진행으로 양자의 차이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변호사실무과목도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민사실무와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변호사의 역할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은 다른 것이므로 민사실체법적 지식 습득만이 과목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 변호사실무과목의 장점은 그래도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법원과 다른 측면에서 법조를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있는데 두 과목을 합친다면 이러한 장점이 없어지고 변호사실무교육이 소외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견해,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통합하여 한 과목으로 운영되면 변호사실무교육은 거의 이뤄질 수 없다고 보는 견해, 변호사로서 필요한 법적 소양이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교수님보다 현장에 있는 변호사들의 강의를 더 적합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 변호사 실무 교육의 내용에 대한 설문

각종 서류, 서식에 대한 설명, 실제 송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견해, 소장작성이나 변론요지서 등 소송에서 직접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형식 등을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분 등은 민사재판실무와 많이 중복되므로 제외하고 실제 송무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실체법과 관련하여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견해, 각종 서류작성이 바로 시험문제에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거의 강의도 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부담스럽다고 하는

◦ 변호사교수요원 확보의 어려움

판검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교수진의 구성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변호사전임교수의 추가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정이다. 이 때문에 외래교수에 의존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은 강의 준비의 부실이나 강의의 부실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 대안의 어려움에서 나온 민사재판실무와 변호사실무의 통합방안

견해, 강평을 실제 변호사업무와 관련하여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소장에서부터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서류작성에 관해 강의가 충실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견해, 변호사님들의 수업이 부실하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딱딱한 수험일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견해, 민사변호사실무 교육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 견해, 신변잡기식의 경험담 위주보다는 실제 변호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강의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강의가 될 것이라는 견해, 일반 민사실무강의만이 아니라 전문분야 변호사를 초빙하여 특강형식으로 전문분야의 내용을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변호사교육의 필요성에 비해 교수진 확보나 교재내용이 부실하고 민사재판실무와의 과목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 어음 조세 강제집행 등 각 분야별로 변호사의 특성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 변호사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연수원생들은 정작 경매실무와 같은 직접 와 닿는 실무를 원하며 등기, 호적, 공탁, 경매와 같이 법무사업무로 취급되는 영역에도 단독 혹은 합동으로 개업할 연수원생들을 위하여 실질적인 수습을 받을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는 견해, 현행처럼 변호사실무를 별도의 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교재가 좀 더 충실하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변호사사무실의 운영,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 교육방식

변호사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나 연수원에서의 변호사실무교육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차라리 연수원에서의 변호사실무교육은 폐지하고¹⁾ 변호사실무수습기간을 늘려 변협에서 변호사이론교육을 1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한 뒤 실무수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변호사실무는 말 그대로 실무수습에 중점을 두고 연수원수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변호사실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익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1년차의 변호사실무강의는 없애고 시보를 하면서 선택적으로 지금보다 더 긴 기간을 변호사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사례연구발표 및 토론수업, 실제 변론시의 생생한 경험강의 등의 수업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변호사가 현재 맡고 있는 사건 중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을 연수생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소송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감각과 책임감의 고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¹⁾ 등이 있다.

- 기타

강의교재나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견해, 변호사실무시간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수업준비도 부실하고 모범답안이 충분히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강사를 선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열의가 있고 가급적 젊은 변호사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견해, 젊은 변호사는 경험은 일천하겠지만 진지함과 수업에 대한 준비정도는 더 낮지 않을까라는 의견, 또한 판사출신 변호사들은 법원 재직 중의 이야기를 많이 하므로 판사직에 있다가 변호사를 하는 경우보다 바로 변호사로 진출한 분들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외부 변호사 강사들 중에 판사 출신이 많아 수업시간이 재판실무시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견해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교재를 통합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체계를 구성하고 각 단계별로 소송주체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안은 기존의 교수구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실무를 가르칠 때 변호사의 관점도 가미하여 동시에 강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⁵⁵⁾

그러나 이러한 교재의 통합은 결국 기존 변호사실무교육을 강화한 것이라기 보다는 민사재판실무과목에 변호사실무를 흡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점에서 본다면 과목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교육의 강화나 변호사중심교육으로 중심을 이동시켰다는 표현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두 과목을 한 과목으로 합치고 중복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기에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교수요원이 늘어나거나 변호사 실무교육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두 과목으로 나누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교수와 교재의 차이로 두 과목이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던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판사교수중심의 강의운영이 더욱 강화되어 변호사실무영역 자체가 축소되거나 더욱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민사재판실무가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비해 민사변호사실무는 미시적 관점 못지 않게 거시적 관점도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⁵⁶⁾ 이 부분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국내 유수의 로펌관계자들의 평에 의하면 아주 우수한 성적의 사법연수원출신 초임 변호사들도 판례가 있는 사례에 대한 사건처리능력은 우수하나 판례가 없거나 불확실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처리 방향을 설정하는 능력은 매우 떨

55) 실제 통합교재의 세부목차로 제시된 것을 보면 민사실무 I이라는 제목 하에 민사사건과 변호사실무, 소장의 작성(당사자 선택, 당사자자격, 당사자능력, 당사자 등의 표시, 사건의 표시, 청구취지, 소송비용, 가집행, 청구원인, 부수적 기재사항, 답변서, 소의 변경과 반소, 서면에 의한 쟁점정리절차, 쟁점정리기일,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종결 및 판결 선고, 조정, 화해 등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56) 같은 책, 35면의 토론 기록.

어진다고 한다.

또한 강의와 교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외형적·물리적 통합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의도 완전히 현실과 맞추어 판결 단계 이전의 소장의 작성, 변론단계는 변호사교수가 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앞서 보았듯이 사법연수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강의능력과 열정, 책임감을 갖춘 적정한 인원의 변호사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⁵⁷⁾

교재통합의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이론적 부분의 강의를 기존처럼 민사재판실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실무의 관점에서 각 청구취지에 대한 모범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재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교재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재통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변호사실무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부분의 학점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⁵⁸⁾

◦ 평가의 문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판실무와 변호사실무과목 사이의 평가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작성한 판결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문구 하나하나에 대하여 점수를 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연수생들이 판결서 작성하는데 비중을 너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어 연수생들이 변호사실무과목에 비중이 약하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⁵⁹⁾

◦ 변호사과목 교육의 특성 및 어려움

연수생들에게 변호사과목은 공부할 해도 안 해도 풀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연수생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산파와 같은 교육방법이 필요하다.⁶⁰⁾

57) 같은 책, 36-37면의 토론 기록.

58) 같은 책, 38면.

59) 같은 책, 68면.

② 변호사 실무수습방식에 대한 논의

- 강의내용의 조정

변호사로서의 사건접근방식, 법리구성능력, 입증활동에 교육의 중점을 두어 강의를 진행하고 각종 서면의 작성 시에도 실체법 이론의 측면보다는 간결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문서작성훈련을 지도하고 입증방법 부분도 실제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방법선정 훈련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변호사에게는 복잡한 실체법 이론과 판례를 다루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사건상담 및 사건수임 이후 소송결과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실무훈련을 쌓는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복잡한 이론식 강의보다는 상담요령, 수임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각종 서면 작성방법, 입증방법 강구, 변론시 유의사항, 결과보고 방식 등에 대한 지도 또는 강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재에 따라 평면적으로 강의를 하기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법이 낫다.⁶¹⁾

이에 당사자표시방법, 청구취지 표현 등은 민사재판실무시간으로 대폭 미루고 변호사실무시간에는 실용적인 교육을 최대한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교재개편

실무의 활용도를 높이는 강의교재의 개편과 민사재판실무와 중복되는 내용은 대폭 축소하는 교재의 개편이 필요하다. 교재에는 다양한 기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변호사 강사가 집필을 하고 나중에 원내교수가 종합 조정하거나 1인의 원내교수로 하여금 전담 집필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60) 같은 책, 69면.

61) 앞서 본 것처럼 연수원에서의 변호사실무교육은 연수원의 오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사법연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사법연수원은 판사 및 검사라고 하는 사법인력을 양성해 내는 기관이라는 점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변호사실무교육은 변호사 교수와 변호사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가장 충실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과목조정에 대한 검토

민사재판실무와의 내용중복과 강사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사절차 전반에 대한 총체적 이해증진을 위하여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사실무과목은 원내교수를 주임교수로 변호사를 강사로 하여 운영한다. 원칙적으로 원내교수가 강의를 주도하고 변호사업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몇 개의 주제를 선별하여 변호사 강사에게 맡기고 회사정리 등 특수 분야의 변호사업무에 관해서는 경우에 따라 특강형식으로 진행한다. 재판실무와 변호사 실무 과목을 통합 운영하면 연수생들의 과목부담도 경감할 수 있고 출제의 제약도 상당부분 해소되어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의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 강좌개설시기에 대한 논의

민사재판실무와 민사변호사실무를 분리 운영한다면 민사변호사실무는 상당부분 민사재판실무의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첫 학기에 민사재판실무에 관한 실무 감각을 어느 정도 익힌 이후 2학기부터 민사변호사실무를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 탈락형 공무원 선발시험방식에 의한 변호사실무교육의 근본적인 한계

과거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으로 법률가를 선발하던 시험은 1963년부터 사법시험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고위직 공무원인 판사와 검사를 뽑는 방식은 그대로였으며 공무원 수는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정원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사법연수원제도는 1962년 이래 사법시험 합격자 양성기관이던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대체하면서 1971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제하에서도 1980년까지 합격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판검사로 임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 사정은 1981년 사법시험합격자가 300명으로 증원된 뒤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때에도 합격자의 절반이상이 판검사가 되었다

는 점에서 사법공무원양성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었다.

결국 법률실무교육의 변화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수 있는 합격자의 수가 순차적으로 증가되어 1000명이 이르면서 사법시험은 비로소 국가공무원인 판검사를 임용하는 고등고시의 성격에서 변호사를 배출하는 시험으로 되면서 비로소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검사의 임용을 염두에 두고 실시되어 온 사법시험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변호사를 다수 양성하게 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지 않고 정해진 수를 정해 놓고 그 등수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거 탈락시키는 공무원선발시험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⁶²⁾

결국 종래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에 의한 법률가의 양성은 변호사 양성교육부분을 강화하고 학점제에 의한 과목이수로 변경하는 등의 연수원 내부의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락형 공무원선발방식에 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변호사 양성교육의 성격보다는 판사와 검사의 양성이라고 하는 공무원 양성교육의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렇게 수년간 형성된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사법연수원의 기수나 서열에 구속되는 경향이 생기는 부작용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양성교육은 공무원 교육기관이거나 탈락형 공무원 선발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 실무교육의 구조적인 결립들은 일단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에 의하더라도 기존 변호사 실무교육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에는 변호사 실무교육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1조와 제2조에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62) 김도현, 한국의 소송과 법조,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236-237면.

정의를 실현하며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는 의무를 가지므로 공인의 성격을 갖는다는 공적 성격을 강조한 변호사의 목표설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여전히 수입료나 자문료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수익도 확보해야 하는 사적인 이윤추구를 해야 하는 자유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도외시하고 변호사는 사회공익에 봉사하여야 하며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하므로 후진의 양성에도 협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경제적 유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무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 채용하지도 않을 장래의 변호사들에 대하여 연수원이나 변호사협회의 협조의뢰만으로 해당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이 변호사실무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변호사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역할은 기존 연수원모델이나 새로이 주장되는 변호사협회의 주도의 모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수원의 경우는 판사와 검사의 교육 외에 부수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줄기차게 새로이 양성되는 변호사의 수를 줄이자는 입장에 있으므로 신규 변호사 실무교육을 담당하기에는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다. 결국 신규로 배출될 변호사의 실무교육은 각 변호사사무실이나 법인이 신참변호사를 선발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적응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인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양성기관이 되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거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개업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실무능력은 갖추도록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에서 변호사실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할 책임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변호사양성에서의 주안점

가. 변호사 양성기관으로 특화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양성기관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시험이나 학점 및 졸업시험, 졸업 후의 변호사 선발시험(현재는 미정)은 그 중 어느 것도 기존의 사법시험처럼 공무원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니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또 그러한 역할을 표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이미 행해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생 선발절차가 입학생들의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정해지고 신청대학 중 특정 대학에게만 설립인가를 한 점, 총 정원 부분을 제외하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커리큘럼 등)은 대학에 전적으로 맡긴 점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결과를 그대로 판검사의 임용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선발기능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적인 역량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며 그 중에서도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는 각 대학의 교육철학, 여건, 교수진의 구성, 지역특색에 따라 구별되는 다양한 변호사의 양성에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보태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의 양성은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실무가로서의 변호사 양성기능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양성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기능을 포괄하면서도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경쟁력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도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사법연수원교육에서조차 어려웠던 변호사양성기능의 내실화까지 보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기간이 단축⁶³⁾되었다는 측면, 연수원의 판

63) 기존 법과대학 4년, 수험생활, 연수원 2년을 합쳐서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교육 내에서 완성해야 한다

사·검사 선발용 교육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점,⁶⁴⁾ 법률시장의 개방이 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에 속한다.

서비스업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을 법률서비스업인 변호사업 역시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며 그 경우 그동안 자격증 유무에 의하여 진입이 제한되던 법률서비스 시장은 수요자들의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재편될 것이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의 법조인 육성은 바로 이러한 공급위주의 법률시장에서 수요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이 투영된 교육책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변호사 실무교육의 방법 및 교육내용 설정에서의 주안점 및 주의할 점

1) 현장에서 행하는 실용 교육

연수원에서의 변호사 실무 교육은 교육기간이 짧았고, 변호사실무교육 역시 4학기 평가를 위한 모의기록작성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고 있었다. 더군다나 연수원의 교육은 교육이라는 기능 외에 연수원생들을 미세한 점수 차로 구별함으로써 판사·검사를 선발해야 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학생들은 선발에 도움이 되는 과목 또는 연수생들 개인 간의 점수 차이가 심한 과목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수원에서는 변호사 실무 강의를 위하여 시설 및 교수인력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고자 했으나 변호사들에게는 연수원의 변호사 교수요원이 별 매력이 없는 것이어서 연수원은 결국 변호사 교수요원의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간혹 확보된 교수요원이 있어도 그들은 연수원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교수요원이라기 보다는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소속되어 있어 여가시간에 잠시 강의를 할 뿐인 매우 불안정한 교원의 위치에 있었다. 이 때문

은 점에서 교육기간은 매우 큰 폭으로 단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4) 이 점은 교육기간의 단축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일부 할 수 있을 것이다. 판사·검사의 양성을 위하여 행해졌던 연수원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기존 사법시험의 방식과 연수원 교육의 상당부분 벗어나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다.

에 외부변호사의 협조에 기초한 변호사실무교육은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강의의 질과 수준 역시 변호사 개인의 정성과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인 문제점⁶⁵⁾이 있었다.

2) 다양성과 기본기를 살리는 교육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변호사의 역할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은 달라 민사실체법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만이 변호사실무 교육의 목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실무교육은 실제 변호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강의하는 방법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강의를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장에서부터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서류작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지도하고 강평하며 첨삭을 해 주는 강의를 더욱 필요한 측면이 있다.

결국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의 업무와 달리 변호사실무는 복잡한 실체법 이론과 판례를 다루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사건상담 및 사건수임 이후 소송결과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실무훈련을 쌓는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복잡한 이론식 강의보다는 상담요령, 수임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각종 서면 작성방법, 입증방법 강구, 변론시 유의사항, 결과보고 방식 등에 대한 지도 또는 강의를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교재에 따라 평면적으로 강의를 하기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변호사실무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익혀 진정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의 사건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고 독립된 변호사로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

65) 변호사 교육 자체만을 놓고 보면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연수생을 모두 구별하여 차별화된 점수를 부여하여 판·검사를 선발하는 기능도 해야 하는 사법연수원으로서의 균질의 교육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연수원으로서의 강의의 질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연수생들이 동일한 시험문제로 평가를 받고 점수가 부여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변호사 실무교육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 중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을 연수생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소송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 감각의 증대와 연수생들의 책임감 고양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보태어 변호사실무과목의 강의 내용은 상담기술, 협상기술, 법률자문, 변호사사무실 경영 방법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도 있다.

3) 민·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조화되는 교육

우리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균질의 동일한 방식의 교육을 지향하는 기존 연수원 교육과 달리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주도하여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 또는 원고변호사가 사건을 구성하고 풀어 나가면 피고 또는 피고변호사는 그 한도 내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법관은 원·피고가 다룬 범위나 한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변론주의를 취하는 한도에 있어서 민사 사건을 주도하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피고 측 변호사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은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거의 고려하지 않아 변호사실무교육은 판사나 검사를 위한 교육의 부수적인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선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실무교육은 당사자 또는 변호사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민사소송법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개인지도형 변호사실무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분야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호를 하는 독자적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올바른 변호사 실무 교육의 중요성

변호사 실무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교육은 기존 사법연수원의 판·검사 양성교육과 달리 '변호사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여 법률 현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하나의 이정표나 미리 해 본 경험이 되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의 입장과 달리 전혀 법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사실을 처음 대하여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며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자기 나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뢰인을 대하는 방법에서부터 화해, 협상, 중재와 같은 소송외적인 서비스 능력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히 선택하고 소송절차의 장단점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세를 익힐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변호사는 여러 각도로 사건을 검토하는 힘을 키우고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을 창조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실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실무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이론과목에서 기본 지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실제 사건을 직접 다뤄보며 적용하는 인턴십과정 또는 클리닉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 실무교육은 기존 변호사의 실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법조직역현장에서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 처음부터 불법적인 업무형태를 행하는 선배변호사에게 고용되어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경향이 있었다는 비판⁶⁶⁾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올바른 실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66)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수습 충실화 방안,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6, 85면.

할 수 있다.

라. 사법연수원생들의 변호사 사무실 실무수습의 실태

기존 변호사 실무 수습에서는 연수생들의 변호사사무실 출석이 저조하며 실제 사건에 참여하여 배우는 형태의 실무수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특히 사법연수생들이 변호사 실무수습항목이 정한 내용의 서류를 변호사사무실의 실제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연수생의 보고서가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형식적으로 채워지고 연수생들은 그 시간에 판·검사의 임용에 가장 중요한 4학기 시험을 준비하는 파행이 계속되어 왔다고 평가되었다.⁶⁷⁾ 이 때문에 연수생의 개인적인 도덕성과 법률사무소나 로펌의 열의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는 한 변호사 사무실 실무수습은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수습의 충실도는 매우 떨어지는 형태의 실무 수습이었다고 평가된다.

그 원인에 대하여 사법연수원에서는 사법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욕부족, 지도관 변호사의 열의 및 관심 부족, 변호사실무수습기간이 4학기 시험준비기간으로 악용되는 점, 변호사사무실의 여건이 열악한 것 등을 들고 있다.⁶⁸⁾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연수원 교수들이 대부분 판사, 검사이고 변호사실무를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거의 없다는 점, 2-3년에 불과한 단기의 교수파견기간은 교수들의 경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미 마련된 교재에 따라 교육을 하는 연습을 하다가 끝나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이 판검사요원을 선발하기 위한 탈락형 시험이라는 점, 사법연수원의 교육시스템과 조직운영이 관료적이라는 점, 사법연수원의 평가시스템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 이기적인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게 만드는 시험점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⁶⁹⁾

67)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수습 충실화 방안,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6, 85-94면.

68)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수습 충실화 방안,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6, 86면.

생각건대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 실무수습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연수원생들이 임용을 위하여 시험준비에 너무 집착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다음은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이 이들의 실무수습에 협조할 유인이 없었던 데서 찾을 수 있지 않나 한다. 적어도 변호사 사무실의 실무수습에 대해서는 연수원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원이 법원 산하기관도 아닌 변호사협회에 대하여 연수생들의 실무교육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대로 변호사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이기는 하나 개별 변호사에게 변호사실무교육에 대하여 강제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를 위한 단체이지 변호사를 양성하는 교육단체가 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법연수원과 변호사협회는 개별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실무교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외에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법수습생 지도연락위원회라는 것도 동일 지역 내의 실무수습관련기관들이 모여 지도연락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습생들의 반을 나누며 공동연습(우리의 합동수습), 견학, 모의재판 등에 대한 행정적인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외에 실무수습의 내실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운 시스템일 수 있지 않나 한다. 결국 실무수습을 어떻게 내실 있게 꾸려나갈 것이냐는 실무수습의 맡아서 행하는 변호사 개개인들에 거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호사실무에 관한 연수원 내의 교육까지 포함한다면 모르겠으나 외부에서 행해지는 변호사사무실 실무교육에 관한 부분만큼은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따라서 변호사사무실에 행해지던 변호사 실무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69)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JURIST, 2003. 2.(Vol. 389), 15-42면.

Ⅲ. 국내외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현황과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1. 각국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현황

가. 외국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미국 로스쿨의 경우는 로스쿨 수료 후 변호사시험(bar) 시험을 합격하면 별도의 실무교육이 없이 변호사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의 변호사 양성은 로스쿨 외에 “별도의 연수기관”에 의한 교육이 없을 뿐 그 어느 나라보다 변호사의 실무교육을 충실히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주로 미국식의 임상법학방식(legal clinic)의 교육⁷⁰⁾과 미국 내 일정 지역 또는 미국 전역의 로스쿨이 참여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형식을 빌려 실전을 방불케 하거나 실전 이상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 임상법학방식(legal clinic)의 실무 교육

미국의 로스쿨에서 현장실습을 중시하면서 임상법학(clinical legal education) 강좌들을 개설하고 있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임상법학은 법률 실무를 염두에 둔 교육을 충칭하는 것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미국에서 개발되어 온 ‘미국적인’ 법학교육의 하나이다. 이 교육방법은 “클리닉(clinic)”이라 부르는 임상법률사무소를 로스쿨이 운영하면서 이 곳에서 학생들이 직접 실제 사건을 다루게 하는 것이다.⁷¹⁾ 결국 **임상법학은 의과대학의 임상의학에서 아**

70) U.S. News & World Report에 따르면 미국 204개 로스쿨 중 임상법학으로 유명한 3개 학교가 NYU Law School,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라고 한다.

이디어를 빌려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학생들이 법률가로서 일할 수 있도록 로스쿨에 법률사무소(law office)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할 있다.⁷²⁾

기본적으로 클리닉 과목은 로스쿨의 다른 교과과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일정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클리닉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필자가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있었던 뉴욕의 포덤 로스쿨에서는 로스쿨 순위 평가에서 클리닉 과목의 교수 대 학생비율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클리닉 과목은 청강이나 참관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당시 클리닉 과목의 교수 대 학생비율은 대략 1:8 정도이며 1:10 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⁷³⁾

그런데 판례의 분석과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로스쿨의 대부분의 과목이 사실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 그저 '주어지는' 데 비해 클리닉 과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여 '찾아내야'⁷⁴⁾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에 학생은 자신이 맡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도 찾아내야 하므로 그 어느 것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중요시된다.

임상교육은 또한 변호사업무를 직접 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법이나 판례를 잘 모르고 법학적 훈련을 받지 못한 일반인 고객을 상대하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변호사의 법률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우나 법률서비스에 임하는 변호사의 성향이나 자세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단골 고객이나 대가없이 다른 고객에게 그 법률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고객의 상당수는 변호사의 법률실력보다 사건에 대한 노력과 고객에 대한 배려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71)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도서출판 정법, 2007, 26-32면.

72) 장영진/하혜경 저, 미국법[I], 법률문화원, 2008, 241면.

73) 또 다른 교수는 클리닉 교과목의 교수 확보 비용이 로스쿨의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외부변호사로 충원되는 클리닉 과목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매우 높으나 그 반면에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한다.

74) 같은 책, 27면.

따라서 클리닉 과목에서는 고객이 심문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에 얻어내는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협상 및 상담기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조사, 수사기법, 소송준비를 위한 증거수집, 증인채택 요령, 직접신문과 반대신문 요령, 변론술 등을 클리닉 과목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또 때로는 당사자를 대신한 협상에서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다.

임상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법원, 검찰, 여러 행정관청 등에 출입하여 맡은 사건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는 학생들이 장차 법률가로서 빈번히 접촉하게 될 이들 기관의 조직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기관의 실제 운영과 법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거기에 보태어 이들 기관의 관행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⁷⁵⁾

그런데 임상교육이 이론보다 실무를 중요시한다고 하여 현실의 실무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무지나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윤리에 위배에 기인하는 실무에 대해서는 현실의 실무관행을 재조명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한다. 이를 위해 임상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변호사의 올바른 위상, 사회적 평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실제 체험을 통하여 구현하도록 교육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러한 목표는 로스쿨 학생들이 임상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실무를 로스쿨에서 배우게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실무를 로스쿨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수가 아닌 실무가에게서 배우게 된다면 이들은 현재의 관행만을 습득하게 될 수 있지만, 이들이 교육기관인 로스쿨에서 배우는 이상 교육기관의 속성상 로스쿨은 현재의 관행만을 가르치지 않는 때문이다.⁷⁶⁾

75) 같은 책, 28면.

76) 실제로 임상교육의 의뢰인들은 주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며 상담에서 사건의 처리와 같은 실무를 하는 방법도 배우게 된다. 장영진/하혜경 저, 미국법[I], 법률문화원, 2008, 241면.

결국 로스쿨의 클리닉 교과목은 현실적 필요 때문에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지만 동시에 로스쿨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술이 절대적인 것도 영원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동시에 가르친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현재의 법제도와 법률 실무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로스쿨의 임상교육이 추구하는 **빼 놓을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하다.**⁷⁷⁾

클리닉 과목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수방법을 취한다.

- 개인지도 및 감독

임상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직접 법률가의 업무를 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실무경험이 풍부한 임상교육 담당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도·감독(supervision)한다.

이러한 지도·감독기능은 사건의 선별에서 시작된다. 담당교수는 사건의 교육적 가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고르고, 학생이 그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기간 중 처리할 사건의 수도 적절히 제한한다.

현장에서 학생들이 실무를 처리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담당교수는 절대 전면에 등장하면 안 되고 사건처리를 주도해서도 안 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행동하여 학생들이 교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교육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집단회합

담당교수는 자기의 감독 하에 있는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한다. 이 회합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경험담을 서로 교환하고 전략적인 문제에서부터 윤리적, 제도적 문제 등을 토의한다.

경우에 따라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논문이나 책 등의 읽을거리를 추천해 주기도 하지만 모임을 주도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이 모임을 통하여 졸업 후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검찰청, 공공기관, 회사 등에서 다른 법률가들과

77) 같은 책, 29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동심을 기르게 된다.

◦ 실무 세미나

임상법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보통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임상법학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통적인 강의와 토론 외에 실험적인 교수방식⁷⁸⁾이 채용되기도 한다.⁷⁹⁾

나) 일정 요건 하에 로스쿨 학생의 변호·대리 허용⁸⁰⁾

미국 각 주는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학생실무규칙」을 제정하여 로스쿨 학생이 주법원에서 변호나 대리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⁸¹⁾

이를 위하여 미국변호사협회(ABA)는 모델 룰(model rule)을 제정하고 있는데 각 주의 학생실무규칙은 대부분 미국변호사협회의 룰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모델 룰에서는 미국변호사협회 공인의 로스쿨에 재학하면서 최소한 4학기 수업을 마치고 학장이 선량한 성격이고 적절한 법적 능력이 있으며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고 법정 활동을 하는 변호사가 법원에 소개하면 그 학생은 변호·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정활동을 하려면 학생은 사건의뢰인과 지도변호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령상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된 사건에서는 법정에 지도변호사와 동석(同席)하여야 한다.

78) 소모임 분임토의(small group discussion): 4-6명의 학생이 소모임을 만들어 세미나 중에 별도의 시간을 주어 특정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책을 찾아내도록 한다.

모의훈련(simulation):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학생들에게 사건의뢰인,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들의 연기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비평을 해 준다.

시범(modeling): 담당교수가 특정한 역할을 직접 맡아서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여준다.

공동강의(team teaching): 둘 이상의 임상교육 전담교수들이 함께 참여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러 교수의 다양한 경험 및 접근방법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79) 같은 책, 30-32면.

80)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수습 충실화 방안,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6, 95-96면.

81) 필자가 방문학자로 가 있던 뉴욕의 로스쿨에서도 학생들은 작은 사건을 맡아 직접 처리하고 하고 야간시간을 이용하여 ADR 관련 협상, 조정 등을 행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이나 단체와의 협약이 있으면 실무의 경험과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나름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건의 의뢰인을 빈곤자·저소득자로 한정하는 수가 많다. 또한 소수이지만 상급심에서의 법정 활동을 제한하는 주도 있다.

다) 모의재판 경연대회(moot court competition)

미국에서는 학내, 지역, 미국 전역, 전 세계 대학을 망라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 대학마다 특정 분야를 특화하여 각종 대회를 준비하기도 한다. 대회에서 대략 1-3위권 내의 입상은 학교의 영광이며 개인이나 단체의 영광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절차나 각종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DR)에 대한 실천과 동일한 연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변호사 실무교육의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⁸²⁾⁸³⁾

라) 학생 로클릭⁸⁴⁾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별도로 선발되어 판사실에서 근무하는 로클릭 외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연방이나 주법원의 판사실에서 판사와 로클릭을 돕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방문했던 뉴욕 연방동부지방법원의 경우 학생 로클릭은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나 피교육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받은 보수는 전액 로스쿨의 수입이 되었다.

이러한 학생신분의 로클릭 역시 판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직간접으로 익히고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변호사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한다.

82)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있고 대법원에서 올해 처음 개최하는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Korea Moot Court Competition)”를 개최할 예정이다.

83) 근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만이 아니라 홍콩, 중국, 일본 등 아시아계 학생들 참여도 늘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대회가 되는 분야가 급속히 늘고 있다.

84) 적절한 명칭인지 의문이나 로스쿨 학생이 법원에서 실무수습도 하고 판사 및 로클릭의 업무를 돕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이 학생 로클릭에게서 필요한 자료나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일반 로클릭의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 학생 로클릭의 보조업무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일본의 경우⁸⁵⁾

일본은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로스쿨 졸업생들은 신사법시험 합격 후 우리와 달리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통합실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⁸⁶⁾

사법연수소에서는 실천적이고 임상적인 의미의 법률실무가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법조 활동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적인 기법과 마인드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새로운 사법수습에는 실제 현장에서 행하는 실무수습을 중심으로 하며 이를 체계적 실무교육으로서의 집합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 이를 위해 수습은 분야별 실무수습, 종합형 실무수습, 집합수습 등의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실시한다. 법과대학원의 교육은 이러한 통합실무수습이 행해질 것에 대비하여 실무와 연결된 법이론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분야별 실무수습은 변호사수습, 검찰수습, 민사재판수습, 형사재판수습의 4가지 분야로 나뉘며 실제 사건을 현역의 변호사, 검찰관, 재판관의 개별 지도 아래 처리한다.

종합형 실무수습은 사법수습생의 지망이나 수습실적 등을 토대로, 분야별 실무수습을 보완하는 수습, 분야별 실무수습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분야의 수습 등을, 사법수습생이 주체적으로 조합하여 수습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새로운 집합수습의 목적은 분야별 실무수습 후 분야별 실무수습을 보완하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체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집합수습의 교육내용은 표준 사건에 대하여 기안, 토론, 강평의 방식으로 한다. 또한 집합수습은 과목간 연계를 강조하고 법조 실무에 필요한 법적 사고능력, 분능력, 사실인정에 필요한 능력, 설득 및 표현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둔다.

집합수습에서는 4개의 과목을 기본으로 70인 정도의 규모로 반편성을 하며

85) 김창록, 일본 사법개혁 논의의 경과와 현황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司法制度比較研究會 제17회 연구발표회, 2004.2.4, 18-19면.

86) 일본의 경우는 우리의 사법연수원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소를 존치하고 교육기간만 1년을 단축시켰으므로 우리의 경우와는 구조가 다르다. 이 때문에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구조는 미국의 로스쿨 구조와 더욱 근접한 것이 되지 않았나 한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검찰관, 재판관이 지도한다. 수습기간은 분야별 실무 수습 8월, 선택에 의한 추가실무수습 2월, 집합수습 2월로 총 12개월의 사법연 수소 수습을 행한다.

3) 독일의 경우⁸⁷⁾

독일 법학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판사, 검사, 변호사만이 아니라 행정부처나 경제계 등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법률전문가를 통합하여 양성(Einheitjurist, Volljurist)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시험과 양성과정이 통합되어 있어 전문화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독일에서는 법과대학 졸업시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취업을 하더라도 대졸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므로 법학을 전공한 이상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1차 국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이나 검찰에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받는다. 민사법원, 형사법원 또는 검찰, 행정관청,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은 필수이다. 그 외 자신의 선택에 따라 특별법원, 공증인, 입법기관, 노동조합, 기업, 국제기구, 외국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실무수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민사법원 이상, 형사법원 또는 검찰 3개월 이상, 행정관청 3개월 이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9개월 이상⁸⁸⁾의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고 선택기관에서 실무수습⁸⁹⁾이 이루어진다. 실무수습생은 수습기간 중 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의료보험과 사회보장혜택을 받으며 주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제2차 국가시험을 합격하여야

87) 사법제도론, 사법연수원, 2008, 275-290면.

88) 독일법관법 및 연방변호사법이 개정된 2003. 7.을 기준으로 기존에 통상 4개월 정도 하던 변호사 수습을 9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89) 독일법관법 및 연방변호사법이 개정된 2003. 7.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선택기관의 실무수습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제한이 있었으나 삭제하였다.

비로소 법률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법관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게 된다.

4) 프랑스의 경우⁹⁰⁾

가) 변호사연수원의 연수

변호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대부분 법과대학을 수료한 후 변호사연수원(CRFP, 프랑스 전역에 19개소가 있음)의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12개월(1년) 간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기간은 1년이며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뉘어진다. 연수비용은 변호사회, 법원, 대학의 협력을 받아 충당하며 연수생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지는 않는다.

이론교육은 법률문서의 기안, 법정에서의 변론, 소송절차, 변호사 윤리, 사무실 경영, 외국어 등 공통기초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실무교육은 변호사회가 지정하는 연수담당변호사(maître de stage)의 지도로 이루어지는데 사건 의뢰인과의 상담, 변론절차 출석, 문서기안 등의 실무를 익히게 된다. 이 기간 중 최소 3개월 동안은 변호사 사무실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중 연수생이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도담당변호사의 입회하에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증인, 집행관, 회계사 사무실과 기업의 법무실, 법원 등에 대한 실무견학도 이루어진다.

나) 변호사적격증명서(CAFA) 취득시험

변호사연수원의 연수과정을 마치면 연수생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후 변호사적격증명서 취득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법학박사는 연수원에서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경우 1년간 추가연수를 더 받아야 하고 다시 시험에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수험자격을 상실하나 연수원 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적격증명서를 받게 되고 각 지방 변호사회에 변호

90) 사법제도론, 사법연수원, 2008, 229-233면.

사시보(avocat stagiaire)로 등록할 수 있다.

다) 실무연수

변호사적격증명서 취득 후에는 변호사 연수원의 감독 하에 2년간의 실무연수를 받는다. 1년은 의무적으로 파리고등법원 산하 파리지방변호사회, 대법원·국사원 변호사회, 파리고등법원대소사회에서 연수를 받는다. 그 뒤의 1년은 공증인, 외국변호사나 회계전문단체, 고등검찰청, 지방법원, 공공 행정단체나 법률이나 재정업무담당 단체, 적어도 3인 이상의 법률가를 고용한 기업, 국제단체 등에서 택일하여 연수를 할 수 있다. 변호사시보는 완전한 변호사는 아니나 변호사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직무상의 권리의무는 변호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정에서의 변론 등 변호사로서의 대부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변호사회의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건수 이상의 국선변호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한다.

실무연수 후 변호사시보는 여수보고서를 연수원에 제출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변호사회에 등록함으로써 완전한 변호사가 되게 된다.

2. 우리나라에 있어서 변호사실무수습의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검토

가.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실무수습 주관기관으로서의 한계 및 변호사실무를 위한 경쟁시스템 구축

1) 논의의 필요성

앞서 본 것처럼 종래 사법연수원에서는 다수가 변호사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원의 교육은 변호사 양성교육의 성격보다는 판사와 검사임용이라고 하는 공무원 양성교육의 성격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사법연수원은 구조적으로 연수원교육의 최우선 목표가 판사 및 검사의 양성 및 선발에 있다는 점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1000명이 되었고 그 중에서 변호사로 바로 개업하는 비율이 7,80퍼센트를 넘는다고 해도 사법연수원은 본질적으로 2,30퍼센트도 되지 않는 판사 및 검사교육의 기능을 포기하고 변호사양성기관으로 성격을 바꿀 수는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이 스스로 판사 및 검사의 양성 및 선발기관인 점을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은 국비로 운영되는 연수원이 왜 사적인 영업에 투입될 7,80퍼센트에 달하는 변호사를 양성하느냐는 비판을 막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때문에 연수원의 교육담당자들은 4학기(2년) 동안 교육기간 속에서 학과목을 조절하고 학기운영을 이원화하여 7,80에 해당하는 변호사 교육도 강화한다는 중간적인 방안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 방안의 하나로 시도된 것이 앞서 소개한 변호사 실무 전담교수의 증원, 연수원의 4학기 교육을 변호사 중심 교육으로 하는 방안, 모의 재판 증편 시행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 역시 공무원이 연수원 교수와 변호사의 겸업문제, 변호사인 연수원 교수에 대한 유인(incentive) 부족, 변호사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연수생들의 변호사실무교과목에 대한 선호도 부족 등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간의 사법연수원 변호사양성 교육은 외부출신 강사 변호사들의 개인적인 열의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으며 사법연수원내에서의 시험(평가) 역시 변호사에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판사나 검사 임용자의 선발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결국 판사 및 검사로 임용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 합동변호사사무실에 취업을 해야 했던 변호사들은 법관 또는 검사임용에 필요한 교육을 공통으로 받으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변호사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찾거나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에 취직하여 별도로 배워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수원의 교육방식에 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 양성교육은 공무원 교육기관이거나 탈락형 공무원 선발방식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 실무교육의 구조적인 결림들은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체제에 의하더라도 기존 변호사 실무교육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위탁하거나 외부 변호사교수의 출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변호사교육과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 오히려 변호사 단체에 대한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사법연수원의 협조요청보다 더욱 약화된 관계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변호사의 실무교육은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도외시키고 변호사는 사회공익에 봉사하여야 하며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하므로 후진의 양성에도 협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경제적 유인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무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한 논리로 변호사 협회나 변호사 사무실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법은 실효성은 물론 설득명분도 되기 어렵다. 자신의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 채용할 계획도 없는 장래의 변호사들의 양성을 변호사협회에 협조의뢰를 하는 것만으로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이 변호사실무교육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에 가능한 것도 타당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변호사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역할은 기존 연수원모델이나 새로이 주장되는 변호사협회가 전담하는 모델로는 충분하지 않다. 연수원의 경우는 판사와 검사의 교육에 비하여 변호사 교육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변호사협회의 경우에는 협회의 기본입장이 신규 진출 변호사의 수를 줄이자는 것이므로 신규 변호사의 교육을 전담하기에는 이해가 상반되는 입장(conflict of interest)에 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의 변호사 실무교육

결국 신규로 배출될 변호사의 실무교육은 각 변호사사무실이나 법인이 신참 변호사를 선발하여 자신의 사무실에서 적응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인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 점에서 새로이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을 수료하고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는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무능력은 갖추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결국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철저히 변호사 양성교육기관이 되는 것이며 변호사실무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내에서 완성이 되도록 교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처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방안이 변호사협회나 법무법인이 자기 목적으로 행하는 변호사실무교육과 배타적인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변호사협회나 법무법인은 그들 나름의 교육계획을 가지고 실무교육과 후속 인재의 충원을 하면 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대로 단독 개업하는 변호사에게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실무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의 관계는 외형상으로는 경쟁관계처럼 보이는 실질적으로는 배타성을 띠지 않는 협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제도의 한계에 대한 검토

1) 수습을 받아줄 회계법인의 부족 문제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은 2000년 이전까지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실무수습기관, 특히 회계법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하면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재정경제부가 합격인원을 전년도의 55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거 발생하게 되었다.⁹¹⁾

이에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생들 중 수습기관을 지정받지 못한 합격생들은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

91) 구체적으로 2001년도에는 제13기 회계연수원 실무수습등록자 734명 중 240여명이, 2002년도에는 제14기 회계연수원 실무수습등록자 966명 가운데 수습 포기자를 제외한 952명 중 청구인들을 포함한 375명이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공인회계사 수습제도의 합헌성 여부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⁹²⁾는 실무수습의 관할권 및 그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의 기본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절차적 규정이어서 그 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위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실무수습이 가능하도록 실무수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적인 규정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실무수습의 의무와 2년 이상의 수습기간을 스스로 정함으로써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직접 2년 이상의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로 규정한 것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부가 2001년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들이 회계법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회계감사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 즉 “감사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것을 수용하더라도 입법자가 마련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감사인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감사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92) 2004. 11. 25. 2002헌마809 (전원재판부)

도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도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회계법인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범규범적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었고 입법자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때문에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히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만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와 같은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의 소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3)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수립에서 고려할 사항

그러나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회계법인의 수습회계사 선발수요에 따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⁹³⁾

특히 공인회계사법이 공인회계사(CPA) 합격자들에게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또는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회계실무 수습을 거쳐야 회계사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은 회계사 합격자들에게 또 하나의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4대 회계법인의 수습 회계사 채용 인원이

93) 이하 한국경제신문, 2009.8.4., 28면.

금융위기 여파로 글로벌 차원에서 체질 개선이 진행되어 채용 규모가 급감하게 되자 수습 회계사의 수습대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은 기업에서 하는 실무수습도 인정한다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합격자들이 절대다수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실무수습의 경우는 공인회계사의 경우와도 달라 일반 기업이나 다양한 기관을 실무수습기관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아무리 송무분야로 진출하지 않을 변호사라고 하여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변호사가 행할 기본적인 실무연수가 되지 않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태어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선발인원이 2000명(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율에 따라 연수인원이 조정될 것이나)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에도 이미 다수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이 실무연수기관으로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회계사의 수습대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치열한 연수기관 구하기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부분이 변호사사무실만을 변호사 실무 연수기관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한계가 아닌가 한다.

다. 도제식 수업, 실제 사례로 하는 수업의 필요성

기존 연수원 내의 변호사교육은 연수원생들에게 변호사 개업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사법연수원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연수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속한다.

결국 변호사 직역은 모의재판이나 전형적인 사건을 상정하여 만들어 낸 실무연습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다가 2-3년 정도 대학에서 교육을 전담하는 경우 소송 실제에서의 실무 감각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실무관계자들의 지적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모두 고려하면 미국의 임상법학방식처럼 실무를 로스쿨에서 직접 배우게 하는 방식이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마저 예정하지 않은 우리의 교육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나마 가능한 대안이 아닌가 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 방법에 의하면 실무를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익히게 되므로 실무가에게서 직접 배우는 경우에 얻을 수 없는 보다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배경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여지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기존의 관행만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⁹⁴⁾

그 외 도제식 방법에 의한 학내 로펌에서의 실무교육에서는 모범사례에 대한 다양한 입증(증명)방법, 보전소송, 강제집행분야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다루기 때문에 경찰, 검찰 신문시 참여를 할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참여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현실적 필요 때문에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현재의 법제도와 법률 실무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갖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은 철저히 교육적 목적에 봉사하는 조직이어야 하므로 내부에 실무교육을 위하여 개설되는 기구는 교육목적을 위한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라. 변호사로 바로 개업한 경력의 변호사 실무 강사에 의한 변호사 실무교육의 필요성

현장에서 소송을 해 보지 않은 개업변호사에게는 연수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떨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앞서 연수원 졸업생

94) 실제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개설되어 있는 클리닉 과목이나 공공봉사와 관련된 과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률봉사는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행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들이 지적하였듯이 겁을 먹은 상태로 자신감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의 부담을 해소해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자가 판사나 검사의 경력이 없이 변호사로 바로 개업한 변호사에 의한 교육이 될 것이다.

동시에 실무 변호사 강사는 실무교육을 함에 있어 단순히 만들어진 사례교육이 아닌 실제 사건을 가지고 소송의 전 과정을 다루는 방식으로 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선배 변호사로서의 실패담을 전해 주거나 소송자체를 함께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등의 강의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처신, 태도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고 판사와 검사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보는 시각에 대한 조언도 교육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내용들은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실무요령을 다룬 “실무편람”과 같은 안내서를 공동으로 편찬하는 작업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작은 규모의 변호사사무실은 자체의 예산으로 변호사실무수습을 할 여력도 공간도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일정 시설을 수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협동작업의 필요성도 있다.

동시에 변호사 실무 강사는 상담, 조정, 협상 등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대응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업무는 법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의뢰인들을 대하는 자세나 요령, 예절 등에 대한 부분도 교육의 내용 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회계지식이나 부가세, 소득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마. 교육적 기능을 잃지 않는 실무 교육의 모색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에서는 기존 이론과목과 달리 학생들이 실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자신이 맡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도 찾아내야 하므로 그 어느 교육방법보다 자기 나름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중요시된다. 또한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것이므로 법적인 지식 못지 않게 일반인 고객을 상대하는 요령이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변호사의 법률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우나 법률서비스에 임하는 변호사의 성향이나 자세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단골 고객이나 대가없이 다른 고객에게 그 법률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고객의 상당수는 변호사의 법률실력보다 사건에 대한 노력과 고객에 대한 배려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고객이 심문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에 얻어내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협상 및 상담기법도 활용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사실조사, 수사기법, 소송준비를 위한 증거수집, 증인채택 요령, 직접신문과 반대신문 요령, 변론술 등을 클리닉 과목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또 때로는 당사자를 대신한 협상에서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이 그리하듯이 임상교육이 이론보다 실무를 중요시한다고 하여 현실의 실무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무지나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윤리에 위배에 기인하는 실무에 대해서는 현실의 실무관행을 재조명해 보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상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변호사의 올바른 위상, 사회적 평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실제 체험을 통하여 구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를 로스쿨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수가 아닌 실무가에게서 배우는 경우 현재의

관행만을 습득할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를 배우는 이상 교육기관의 속성상 로스쿨은 현재의 관행만을 가르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바. 변호사 직무대리자격 부여의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법률사건에 변호사로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의 각 주에서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학생실무규칙」을 제정하여 로스쿨 학생이 주법원에서 변호나 대리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수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 한다.

미국의 모델 룰이 우리에게 그대로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 학기를 마치고 지도교수의 추천과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인증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같이 법정에서 사건을 진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이보다 학습효과가 더 큰 실무교육 모델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정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지도로 소위 동석수습이 행해지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사건을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하거나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준하는 사건, 소액사건 중에서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에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변호사법의 개정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 관련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IV. 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방향과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의 설치를 통한 변호사 실무교육 개선의 가능성

1.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의 설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

가. 사법연수원의 변호사 실무 교육과의 구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기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변호사 양성기능을 일정 부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기능을 그대로 답습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기존 연수원에서 행해진 기술적 실무교육으로 이해하는 입장은 나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전범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기존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해 온 기술적 실무교육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연수원 1년차의 민·형사판결문의 작성, 소장·공소장의 작성, 답변서의 작성이나 2년차의 판사·검사·변호사 실무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기능만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연수원을 대체하는 제도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취지를 스스로 흐트리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발상지인 미국의 로스쿨 교육방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우리의 법제가 미국식의 추론 중심의 문제해결방식이 아니라 독일식 법학에서 행하는 요건사실에 구체적인 사실을 해석·적용하여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구조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의 개념법학적인 이론교육을 지속함과 동시에 새로이 미국식의 법적 추론 교육, 사법연수원의 기술적 실무교육을 동시에 전수해야 하는 삼중고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⁵⁾

이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미국의 예를 따르든 독일의 예를 따르든 추론과 이론교육이 동시에 행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교육의 목표가 기존과 같은 시험대비영에 그치지 않고 실용성을 지닌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부분은 기존 사법연수원 방식에서 시행하던 것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하여 이미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미 커리큘럼에 법문서 작성, 민·형사실무, 민·형사 클리닉, 민·형사 모의재판 등의 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특이하게 연수원의 실무수습교육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원, 검찰실무와 달리 변호사 실무는 변호사 사무실의 무성의 또는 비협조⁹⁶⁾와 연수생들의 성적경쟁으로 크게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기존 연수원 체제하의 실무교육 중 변호사실무는 그리 선호되는 방안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실무분야는 몰라도 적어도 기존 연수원의 변호사실무방식은 모범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실무수습과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미국의 클리닉 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과목이 기존 연수원 변호사실무교육을 대체한다거나 기존 연수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여 줄 것이라고 순순히 믿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95) 이를 법학전문대학원이 3년에 불과하다고 하는 시간상 한계를 들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 방식을 거부하고 기존의 법과대학 4년에 고시 학원에서 2-6년, 연수원 2년 방식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은 치열한 경쟁과 오랜 시간적 금전적 낭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법학교육을 능가하는 실력을 갖추도록 했었는지에 대하여 몹시 회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은 실력을 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위한 정해진 내용의 반복교육 방식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수험생활이 법조 실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성격의 것도 아니었다.

96) 변호사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성격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욱 문제는 잠깐 스쳐가는 연수원생에게 실제 사건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업비밀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후책임의 면에서도 변호사사무실이 연수원생의 연수에 적극적이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적어도 변호사 연수에 관한 한 기존 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장려할 방안이 아니다.

아무리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행해지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교과과정 등에 따라 교수 또는 강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행해지는 클리닉 과목의 교육은 변호사 실무교육이라기 보다는 사례교육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범위 내에 머무르는 클리닉 교육은 기껏해야 기존 연수원 내 교육 중 일정 변호사들이 파트타임으로 교육을 하던 변호사교육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양과 질의 양면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하는 교수 또는 외부 영입 변호사 강사의 클리닉 교육은 연수원의 변호사 교육을 넘어서기는 아주 어렵다.

따라서 기존 연수원의 방식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을 감안하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변호사 실무교육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교육용 로펌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검토 가능한 대안일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이에 본 항목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로펌을 설치하고 이 로펌을 클리닉 과목의 교육 및 변호사 실무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나.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 설치의 효과 또는 장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사법연수원 내의 변호사교육은 연수원생들에게 변호사 개업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사법연수원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이 국가가 운영하는 연수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속한다.

이는 결국 변호사 직역의 실무교육이 모의재판이나 전형적인 사건을 상정하여 만들어 낸 실무 연습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또한 변호사의 실무 감각은 개업을 하다가도 2-3년 정도 변호사업무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실무 감각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바뀐다는 특색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러한 한계를 모두 고려하면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방식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한국적인 상황에서 재구성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로펌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 사건을 교수와 학생이 합심하여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실무를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에서 익히게 되므로 현장의 실무가에게서 직접 배우는 경우에는 얻기 어려운 보다 교육적이고 윤리적인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양보해도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교수가 직접 사건을 가지고 지도하는 경우에는 모범사례에 대한 다양한 입증(증명)방법, 보전소송, 강제집행분야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 사건을 변호사와 함께 다루기 때문에 경찰, 검찰 신문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얻기에 유리⁹⁷⁾하거나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데도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은 현실적 필요 때문에 변호사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키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현재의 법제도와 법률 실무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갖도록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능은 실제 사건을 다루는 학내 로펌이 있을 경우 배가될 수 있다. 다만 학내 법무법인은 철저히 교육적 목적에 봉사하는 조직이어야 하므로 내부에 실무교육을 위하여 개설되는 기구는 교육목적을 위한 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학내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바로 개업한 경력의 변호사 실무 강사를 초빙하여 사건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살아 있는 변호사 실무교육을 도모하는데도 더 편리할 수 있다. 이로써 직접 소송을 해 보지 않고 바로 개업한 선배변호사

97) 경찰이나 검찰에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지도교수가 동반 참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혼자서 가는 것보다 상대방측이 더 주의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에게서 보다 더 구체적인 경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학내법무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초빙하는 실무 변호사 강사가 강의안을 작성하는 부담대신에 실제 사건을 가지고 사안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한층 수월한 변호사실무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 초빙변호사의 사무실이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실무교육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학내법무법인 자체가 그 공간을 대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로펌에서 강의를 나온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건 자체가 자신이 속한 로펌의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새어 나간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아서 좋을 수 있다. 교육적으로 유익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로펌의 영업상의 비밀이어서 학생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은 많을 수 있다.

그 외 학내 법무법인에서는 수익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시켜야 하는 부담이 약할 수 있어 보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그러나 법무법인에 수익은 적을 수 있는, 상담, 조정, 협상 등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학내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업무는 실제 법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만나는 순간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에 의뢰인들을 대하는 자세나 요령, 예절 등에 대한 부분을 보다 쉽게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회계지식이나 부가세, 소득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편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모델 롤이 우리에게 그대로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 학기를 마치고 지도교수의 추천과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인증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같이 법정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하거나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준하는 사건, 소액사건 중에서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을 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을 보다 근접한 상태에서 지도할 수 있으며 분쟁처리 후의 결과를 세심하게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결국 위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면 학내 법무법인은 학생들에게 이론의 현안적용으로 현장감을 느끼게 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고, 협상, ADR과 같은 분야에서 상담활동이나 조정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클리닉 과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변호사들과의 유대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내 법무법인은 부수적으로 보수나 비용이 저렴하여 기존 변호사들이 담당할 수 없는 저비용의 분야나 공익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pro bono)에 대한 심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로펌의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안

1)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실무교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신청과정에서의 휴업신청서 제출과의 충돌문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이자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 중 신청 전 변호사업을 휴직하여야 교원의 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⁹⁸⁾

그 후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변호사 휴업을 한 전임교원만을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에 대하여 법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결정⁹⁹⁾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98) 2008헌사134.

9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위헌확인 (2008. 12. 26. 2008헌마19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변호사 휴업을 한 전임교원만을 법학전문대

학원의 법조실무경력교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사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려는 각 학교법인을 직접적 규율대상으로 할 뿐, 각 학교법인과 계약 관계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과대학 교수인 청구인이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설치 인가를 원하는 학교법인과 청구인간의 교수 근무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조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사실상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2007. 10. 30.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20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2007. 10. 30. 교육과학기술부)
 4.3.1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및 확보여부(P/F) : 계획 및 실적평가
 <법조실무경력교원 현황>

구 분	편제완성 학생정원	법정교원 정원 (A)			기 확보 교원 (B)			확보 할 교원 (C)			계 (D=B+C)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이론	실무	계
전임 교원(명)	명												
겸임· 초빙 교원(명)	명												

※ 작성시 유의사항

- 법정교원 정원의 2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경력교원을 충원하고 있는지를 판단
 - 경력 산정에 있어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
 -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함
- ※ 실무경력교원 :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을 말함(법률 제16조④)

【참조판례】

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06. 3. 1.부터 OO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 (2)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10.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20호로 공고하면서, 설치인가를 위한 심사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위 심사기준 중 '4.3.1.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및 확보여부(P/F) : 계획 및 실적평가에 의하면, 법정교원 정원의 20% 이상의 비율에 해당하는 5년 이상의 법조실무 경력교원을 충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의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설치인가를 신청한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 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고 전임교원인 법조실무 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기준'이라 한다).
-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임교원직을 유지하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 설치인가 신청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2007. 11. 26. 변호사를 휴업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소속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2007. 11.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08. 2. 4.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다.
- (4)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심사기준의 내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로서의 겸직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 공고'(2007. 10. 30.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20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 중 "4.3.1.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 확보여부(P/F) : 계획 및 실적평가'의 '※작성 시 유의사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 및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함'이라는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사기준을 통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로스쿨 전임교원에 대하여 전면적·원천적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를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2) 이 사건 심사기준은 실무교수에 대하여 연간 사건 수임건수를 제한하는 방법, 연간 변론참석회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안이 있음에도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를 전면적·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겸직의 자유를 침해한다.
- (3) 이 사건 심사기준은 로스쿨 정식인가 내지 실제운영 시점 이후가 아닌, 로스쿨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변호사 휴업을 강제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시간적 범위를 일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견요지

- (1) 이 사건 심사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심사기준은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적용되는 것이며, 제3자적 지위를 갖는 청구인이 변호사 휴업이라는 선택을 한 것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으로만 연관성을 갖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이 사건 심사기준은 2007. 10. 30. 공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시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은 위 공고 기일 즈음에 헌법소원 청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되는데, 위 공고일로부터 90일이 이미 도과된 2008. 2. 19.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데, 이 사건 심사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근거한 규율이고 확인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참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원 등)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편제완성 연도의 학생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수 15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 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겸임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교원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제외한다)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인으로 한다.

④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수의 5분의 1 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교원(이하 이 항에서 "실무경력교원"이라 한다)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실무경력교원은 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 등으로 확보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변호사를 겸직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은 임용권자가 해당 교수를 겸임시킴에 따라서 얻어지는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사기준은 청구인의 겸직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설령 이 사건 심사기준이 청구인의 겸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의 겸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이 사건 심사기준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인가를 신청한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법조실무경력교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 및 '전임교원인 법조실무경력교원의 변호사 휴업은 인가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함'이라고 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하려는 각 학교법인을 직접적 규율대상으로 할 뿐, 각 학교법인과 계약 관계에 의하여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를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학교법인은 교원수의 5분의1 이상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확보해야 하지만,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겸임교원 등도 채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원으로 채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로스쿨 설치인가를 원하는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법인의 재정 사정 등에 따라 변호사 휴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의 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설치인가를 원하는 학교법인과 청구인간의 교수 근무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초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사실상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학교법인은 교원 수의 5분의1 이상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확보해야 하지만,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겸임교원 등도 채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원으로 채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로스쿨 설치인가를 원하는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학교법인의 재정 사정 등에 따라 변호사 휴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의 교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심사기준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설치인가를 원하는 학교법인과 청구인간의 교수 근무 계약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초래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사실상 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를 각하하였다.

결국 전문법학대학원의 교수는 학교법인이 변호사직을 겸직하는 겸임교원 등도 채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교원으로 채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 제한이 없고 교수가 변호사직을 휴업하고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은 학교법인과 청구인간의 교수 근무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학교법인이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변호사 휴업을 선택하여야만 비로소 나타나는 사실상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심사기준은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사립학교법 복무규정상의 영리행위 금지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겸직금지 규정의 저축 여부

가) 공무원인 교원과 사립대학의 교원

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¹⁰⁰⁾에 의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로 허용한 경우¹⁰¹⁾를 제외하고는 겸직이 금지된다. 사

100) 제18조 (겸임) ① 직위 및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교육·연구기관 기타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겸임시키는 경우에는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달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8, 2008.3.14>

제19조 (겸직금지) 각급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자는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교무과장·학생과장·교장·교감·원장·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3.12.27, 2002.12.5>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3.14>

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사외이사와 관련된 규정 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외이사"란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25조¹⁾에 따라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 (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구성) ① 금융투자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외이사(社外理事)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투자업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 해당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5. 해당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이 속한 대학이 교원의 복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의 학교법인이 복무규정에서 겸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면 허용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나 한다.

나) 겸직허용 공무원

서울대학교 병원설치법 제11조¹⁰²⁾는 공무원의 겸직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겸무·겸직·겸임에 관한 규정¹⁰³⁾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겸직·겸임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6. 해당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다던 자
7.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근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8.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해당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⑥ 금융투자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0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법률 제8852호, 2008.2.29.)

제11조 (겸직) ①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개정 1981.1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대학병원에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이 명한다.

103) 서울대학교 겸무·겸직·겸임 관련 규정

1) 겸무교수 규정 (제정 2008. 2.19. 제1645호, 일부개정 2009. 1. 6. 제1714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교수의 겸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겸무교수라 함은 본교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 소속외의 타 학과(부), 협동과정 또는 부속시설의 업무에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제3조(근무)① 겸무근무는 소속기관과 겸무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업무비율을 정한다.

② 겸무교수는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기간) 겸무기간은 소속기관과 겸무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① 겸무교수는 겸무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② 학과(부) 또는 협동과정의 겸무교수는 업무비율에 맞추어 강의 및 대학원 학생의 논문 지도 등을 담당하며, 부속시설의 겸무교수는 업무비율에 맞추어 부속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③ 겸무교수는 겸무기관의 교수회(학과교수회 포함)의 동의를 거쳐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협동과정 교수회 구성원이 된다.[개정 2009.1.6.]

제6조(임용) 겸무교수는 겸무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임용한다.

부칙(제1645호, 2008.2.19.)

외부기관 겸임

시기	<input type="checkbox"/> 겸임발령 1달 전(본부 교무과 도착)
대상	<input type="checkbox"/> 전임교수 및 기금교수
내용 및 절차	<p><input type="checkbox"/> 본직기관의 직위 외에 다른 기관의 직위를 부여하여 2개 이상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특정직위의 전문인력 확보. 업무수행능력 배양. 교관확보 등에 그 목적이 있음</p> <p>가. 대 상 관련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산하단체의 임직원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에 겸임시킬 수 있다.</p> <p>나. 근 거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2(겸임)</p> <p>다. 겸임기간 겸임에 있어서 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라. 절 차 겸임동의 요청(겸임기관장) → 본직기관장(겸임동의) → 임용제청(겸임기관장) → 겸임발령 <학내절차 : 단과대학 의견문의 → 의견회신></p> <p>마. 복 무 겸임된 교육공무원의 복무는 본직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본직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p>바. 보 수 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된 경우에는 본직의 보수를 본직기관에서 지급 받는다. 이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p>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관련서식 : 교육공무원 겸임 동의서
관련	<input type="checkbox"/>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 또는 교무과

외부기관 겸직

시기	<input type="checkbox"/> 겸직발령 1주 전(본부 교무과 도착)
대상	<input type="checkbox"/> 전임교수 및 기금교수
내용 및 절차	<p><input type="checkbox"/> 본직기관 외에 비영리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기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p> <p>가. 겸직대상 비영리단체의 임직원(예 : 학회,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의 이사, 감사)</p> <p>나. 겸직기간 겸직하는 당해 임직원 임기 : 정관에 명시된 임기</p> <p>다. 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교수 겸직허가 신청(겸직기관 법인 겸직허가 신청) 2) 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 3) 총장 허가 <p>〈순서〉 겸직동의 요청(비영리단체) → 단과대학 의견문의 → 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 → 총장 허가</p> <p>라. 복 무 본직업무(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 허가한다. 또한 겸직하는 직위가 비상근, 명예직, 무보수인 경우이므로 사실상 겸직기관에서의 근무는 인정되지 않는다.</p>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관련서식 : 교육공무원 겸직 동의서
관련	<input type="checkbox"/>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 또는 교무과

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겸직

시기	<input type="checkbox"/> 겸직발령 1달 전(본부 교무과 도착)
대상	<input type="checkbox"/>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및 부교수를 원칙으로 함
내용 및 절차	<p><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대학교원이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국가발전 및 산학협력 차원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p> <p>가. 겸직대상 : 영리단체 임원 나. 겸직기간 : 겸직하는 당해 임원 임기(정관에 명시된 임기) 다. 기 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대로 직무상의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함 2) 교수 1인당 2개회사(벤처기업 겸직 포함)에 한함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상장법인, 상장법인 요건을 갖춘 협회등록법인(코스닥법인) 및 기타 법률에 의한 공기업·금융기관·정부투자기관에 한하여 허가함 4)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대외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으로서 본직업무(교수, 연구)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5) 당해 회사로부터 월정보수를 수령할 수 없음. 다만, 교통비, 회의수당, 연구활동비 등 실비지급은 제외함(제공받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명시). 6)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당해 회사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 단, 사외이사의 배상책임을 대표이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 보험가입의무를 면제함. <p>라. 절 차</p> <p>당해 교수 겸직허가 신청 → 학부(과)장이 대학(원)장에게 추천 → 단과대학(원) 인사위원회 동의 → 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 → 대학 인사위원회 동의 → 총장 허가</p> <p>마. 복무 및 복무감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원)장은 사외이사 겸직허가 후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를 파악 2) 사외이사는 상장기업에서 교통비 등 실비로 제공받는 사항에 대하여 학(원)장에게 반드시 보고, 학(원)장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원 사외이사 겸직신청서 및 사외이사 확인자료, 정관 임원배상책임보험 또는 대표이사 공증각서 등
관련	<input type="checkbox"/>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 또는 교무과

벤처기업 임원 겸직

시기	<input type="checkbox"/> 겸직발령 1주 전(본부 교무과 도착)
대상	<input type="checkbox"/> 본교 전임교수(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내용 및 절차	<p><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2 및 서울대학교창업지원에 관한규정 제14조(벤처기업겸직)에서 대학교원이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국가발전 및 산학협력 차원에서 겸직허가 함</p> <p>가. 겸직대상 영리단체 임원(예, 벤처기업 등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p> <p>나. 겸직기간 겸직하는 당해 임원 임기 : 정관에 명시된 임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서만 겸직이 허가되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공문으로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임기 내에서 기간이 연장되고,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겸직이 자동으로 취소됨</p> <p>다. 절차 당해 교수 겸직허가 신청(겸직기관 벤처기업 겸직허가 신청) → 단과대학(원) 인사위원회 동의 → 학(원)장이 총장에게 추천 → 총장 허가</p> <p>라. 복 무 1) 본직업무(교수, 연구 및 학생지도) 수행에 지장이 없고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 허가함. 2) 이사 등을 포함한 대외활동시간은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으로 함 3) 이사로서 겸직하는 직위가 비상근, 명예직, 무보수인 경우임으로 사실상 겸직기관에서의 근무는 인정되지 않음.</p> <p>마. 복무감독 학(원)장은 벤처기업 겸직의 허가를 받은 교수가 겸직허가 후 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함</p>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정관, 등기부등본, 각서 등
관련	<input type="checkbox"/> 소속 대학(원) 교무행정실 또는 교무과

다. 검토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법무법인이 설립된 경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별도의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사립대학교에서는 학교법인이 복무규정에 겸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면 겸임이 허용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2. 학내에 설치되는 법무법인을 학교기업의 한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 여부

가. 관련 규정

산업교육기관이나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¹⁰⁴⁾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¹⁰⁵⁾에 따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10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2008.2.29]

제36조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10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852호, 2008.2.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가 학생에 대하여 농업·수산업·해운업·공업·상업과 그 밖의 산업

의하여 학교기업은 설치¹⁰⁶⁾되며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¹⁰⁷⁾

에 종사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가. 고등기술학교

나. 전문계 고등학교

다. 전문계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특수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6.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자회사(자회사)"란 대학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106) 제36조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107) 제2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및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시설 안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3. 학교기업 관련 직원 및 학생의 수

제5조 (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산업교육기관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산업교육기관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 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제8조 (학교기업의 예산)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9조 (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학교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종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¹⁰⁸⁾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사업종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1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 (운영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08)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

별표: 학교기업 사업종목으로 금지되는 업종(제11조제1항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분류	학교기업 금지업종(세세분류기준)	업종 수(개)
52	소매업	52222 담배 소매업 528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2개
55	숙박 및 음식업종	55112 여관업 55231 일반유흥 주점업 55232 무도유흥 주점업 55233 간이 주점업	4개
70	부동산업	70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70121 주거용 건물 공급업 70122 비 주거용 건물 공급업 70129 기타 부동산 공급업	4개
88	오락, 문화 및	88313 경마 및 경주장 운영업 88911 전자게임장 운영업	6개

목은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의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산업교육기관은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종목의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의 운영 및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종목을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 대학 내 학교 기업 관련 학칙 규정

대학 내 학교 기업 관련 규정은 학칙에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¹⁰⁹⁾

	운동 관련 서비스업	88912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88913 노래방 운영업 88991 무도장 운영업 88995 도박장 운영업	
93	기 타 서 비 스	93121 옥탕업 93122 마사지업 93992 점술업	3개

109) 제6장 학교기업(2004.8.1 신설)

제98조(학교기업 설치) ①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중앙대학교 중앙인삼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번지 중앙대학교 내로 한다.

③ 학교기업은 산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과, 식품응용과학과, 식품공학과 및 생명공학과와 연계하여 인삼건강식품제조를 사업내용으로 한다.

제99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20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한학기당 인정 학점은 10학점 이내로 한다.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0조(대표이사 등) ① 학교기업의 대표이사는 총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전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그리고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01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이 발생한 경우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본 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제102조(회계연도)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3조(운영세칙)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대학의 부설·부속·협력병원과 학내 법무법인

대학의 부설·부속·협력병원에 대해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학생 교육병원의 대안으로 협력병원 지정제도안과 3가지 형태의 교육연구병원 지정제도안 등 4개안에 그동안의 쟁점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들 안은 교육부가 의평원에 연구를 의뢰해 마련된 것이다.

이 중 협력병원 지정제도안은 의대 부속병원과 특수법인(국립대병원)은 현재와 같이 운영하되,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대 교육은 부속병원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들이 부속병원뿐만 아니라 협력병원을 의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이 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협력병원을 지정하고, 사립대 교수들이 이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라 겸직 형태로 진료 및 임상실습에 참여할 수 있지만 사립대 교수들은 부속병원이 아니면 자신들의 학생이 과건나가 실습을 하는 병원에 겸직해 임상실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다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병원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평가하는 교육연구병원(AMC, Academic Medical Center) 지정기준을 활용, 협력병원 남발을 막자고 제안했다.

3가지 형태로 제안된 교육연구병원 지정제도안은 모든 의대 임상실습병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의학교육 기여도와 의학연구기능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인정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법인격 중심안이다. 의대 부속병원과 국립대병원만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하고,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교육협력병원으로 분리 지정하자는 것이다. 교수 지위와 관련, 학교법인과 특수법인에 근무하는 교수라 하더라도 해당 병원이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받아야만 전임교원 발령이 가능하고,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겸임교원'만 가능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제안한 협력병원 지정안 및 교육연구병원 지정안 모델 비교표

	협력병원지정제도		교육연구병원(AMC) 지정제도	
	1안 (현 제도 유지개선)	2안 (법인격 중심)	3안 (학생교육기능중심)	4안 (임상대학)
중심개념	관행 존중 주의	형식주의	기능주의	대학중심주의
STH의 법인격	법인격		법인격과 상관없음	
STH 가격기준	학교 및 특수법인의 병원에 국한 (기타 법인의 병원은 협력병원 자격)		수련병원 중 선별지정	임상대학개념 병원의 대학구조화
병원의 교육비중	BME ≫ ≫ GME			BME ≡ GME
필요한 인증	협력병원 인증 (교육능력 인증)	교육·연구병원(AMC) 인증		교육·연구병원(AMC) + 임상대학 인증
GME 해석	병원중심의 직무 훈련		대학 중심의 전문인 교육	
전공의 신분 개념	피고용인			피고용인 + '졸업 후 학생'
교원발령 순서 개념	학교(교원) 발령 후 → 병원 근무 (진료의로 근무)		병원 발령 근무 후 → 학교에서 선임 (교원으로 근무)	
임상교원 임용	국립과 동일하게 사립에도 검직 제도 신설 (검임제 소멸)	- 국·공립 : 검직 - 사립 : 검임 * 교원 자격 제한	- 총·학장 자율 임용 * 교원 자격 제한	- 총·학장 자율 임용 * 교원 자격 제한
임상교원 종류	전임, 검직 + 임의 다종 (예 : 검임 등)	전임, 검직, 검임 + 임의 다종	전임 + 임의 다종	전임 + 임의 다종
국고지원 대상교육	- 법인격과 무관 - 전임·검직교원 * 검임은 제외	- 법인격 근거 - 전임·검직교원 * 검임은 제외	- 학생교육병원 - 소속의 일부교원 * 전임에 국한	- 임상대학 소속 - 일부교원(연구, 교육) * 전임에 국한
관련부처	교과부	교과부 + 복지부		
법 체계	현행법 개정	현행법 준수	현행법 개정	신 법체계
장점	- 최소 저항 - 국고 지원 형평성	- 의대신설 억제 - 교육행정간소 - 국고지원절감	- 국고 지원 절감 - 교원 정예화	- BME-GME 일원화 - 의학교육 선진화 - 수련 ⇒ 수련교육화
단점	- 불요 교원수 증가 - 국고 지원 ↑ - BME/GME 이원화 - 의대 신설 유혹 ↑	- 국고지원차별 - BME/GME 이원화	- 의대신설 용이 : 의대신설 유혹 ↑ - BME/GME 이원화	- 부처 간 갈등 ↑ - 통합신설기구 필요
비고	- 고등교육법의 검임 교원제도는 유명무실 - 단기 대안	- 국공립대학도 AMC 인증요구 - 단기 대안	- 임상교원과 임상 의사 구분 - 중기 대안	- 영연방, 미국, 유럽 등 선진국제도 - 장기 대안

또 다른 형태는 학생교육 기능 중심안이다. 이 안은 의대 임상실습병원은 법인격과 무관하게 교육연구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평가해 학생교육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학교법인, 특수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의사도 전임교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세번째 대안은 임상대학안이다. 이 안은 전공의 수련병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임상대학으로 지정하자는 것으로, 이 안대로 하면 의대 교육과정(BME)과 전공의 수련교육과정(GME)이 통합된 임상대학이 탄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안은 법인격과 무관하게 임상대학 피용자도 전임교원 발령이 가능한 형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피용자도 전임교원으로 발령할 수 있다. 이들 교육연구병원 지정안은 상이한 형태를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교육기여도 평가와 연구능력 평가,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의대의 협력병원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이들 안은 법학전문대학원 내 법무법인 설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들 논란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내 법무법인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유사한 형태여야 겸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외부의 법무법인과 제휴를 할 경우에는 협력병원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대학 내 로펌의 설치는 결국 법률서비스를 대학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대학 내에 의과대학의 병원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을 설립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로펌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실무연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고 재직 중인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교원들을 동원하여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나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더군다나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은 금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름의 수익은 더 알찬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호사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사법연수원 방식의 실무교육마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법학교육의 현실에서는 대학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교육을 위하여 대학 내 로펌의 설치는 매우 실용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혹자의 평가처럼 기존의 사법연수원 시스템에서도 외부의 비협조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던 변호사 실무교육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라고 하여 저절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로펌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후배 변호사들의 교육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 할 만큼 여유가 많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이 스스로 최대한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자체의 로펌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이용하여 실무교육을 스스로 충족해 나가는 것도 많은 대안 중에 하나의 훌륭한 대안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법제 하에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필요한 인재를 수많이 배출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뽑을 수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법학전문대학원과 손잡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제 경쟁이 격화될 법률시장 개방의 시점에 한국의 로펌을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기업 역시 사내 법무법인의 인력에 만족하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과 기능적 상호 결합하여 전문성이 있고 다양한 경력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경쟁력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대기업은 별도의 특정 학교에 법무법인의 설치를 지원하여 설치하거나 기업의 법무법인을 학내의 지점의 형식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법학전문대학원과 학교는 그 전제로 학내 법무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겸임을 하게 되는 교원의 처우나 지위에 관한 문제, 시정 각교재 등 강의교재의 개발, 새로운 강의기법의 개발과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제도도입의 전제로 변호사자격증 소지 실무교원에 대한 보수는 실비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든가 외부변호사를 클리닉 수업의 교원으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비를 학교와 정부 및 법무법인이 협동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교 내 법무법인은 법률사무소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기본교육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변호사사무실에서 변호사 실무를 익히는 사법연수원생들 및 또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한계 조건 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설치되는 포럼은 다음과 같은 변호사 실무교육기관의 역할을 지향하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그 한도 내에서만 법학전문대학원 내 법무법인은 나름의 존립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현장에서 행하는 실용 교육

연수원에서의 변호사 실무 교육은 교육기간이 짧았고, 변호사실무교육 역시 4학기 평가를 위한 모의기록작성위주의 교육이 주가 되고 있었다. 더군다나 연수원의 교육은 교육이라는 기능 외에 연수원생들을 미세한 점수 차로 구별함으

로써 판사·검사를 선발해야 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학생들은 선발에 도움이 되는 과목 또는 연수생들 개인 간의 점수 차이가 심한 과목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수원에서는 변호사 실무 강의를 위하여 시설 및 교수인력을 추가로 많이 확보하고자 했으나 변호사들에게는 연수원의 변호사 교수요원이 별 매력을 끌지 못하는 것이어서 연수원은 결국 변호사 교수요원의 확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변호사 교육 자체만을 놓고 보면 문제가 될 것도 없지만, 연수생을 모두 구별하여 차별화된 점수를 부여하여 판·검사를 선발하는 기능도 해야 하는 사법연수원으로서의 균질의 교육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연수원으로서의 강의의 질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 연수생들이 동일한 시험문제로 평가를 받고 점수가 부여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내에 법무법인을 만들어 전임교원으로 하여금 실무교육을 전담하게 하거나 외부의 우수 변호사를 초빙하여 겸임교원의 형태로 소송을 직접 수행하게 하는 방안은 매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학내 법무법인에서는 미국의 임상법학(legal clinic)처럼 법학전문대학원내에서 실제 사건을 학생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감으로써 현장에서 행하는 가장 실용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성과 기본기를 살리는 교육

의뢰인의 사건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변호사의 역할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역할은 달라 민사실체법적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것만이 변호사 실무 교육의 목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실무교육은 실제 변호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강의하는 방법이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강의를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장에서부터 준비서면, 답변서, 각종 서류작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지도하고 강평하며 첨삭을 해 주는 강의를 더욱 필요한 측면이 있다.

결국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하는 판사의 업무와 달리 변호사 실무는 복잡한 실체법 이론과 판례를 다루는 것보다는 변호사가 사건상담 및 사건수임 이후 소송결과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하는 실무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소개하고 실무훈련을 쌓는데 비중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복잡한 이론식 강의보다는 상담요령, 수임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각종 서면 작성방법, 입증방법 강구, 변론시 유의사항, 결과보고 방식 등에 대한 지도 또는 강의를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미 마련된 교재에 따라 평면적으로 강의를 하기보다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변호사실무 교육은 보다 체계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익혀 진정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의 사건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고 독립된 변호사로서 자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 실무교육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 중 사실관계나 법률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을 연수생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연수생들이 소송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 감각의 증대와 연수생들의 책임감 고양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보태어 변호사실무과목의 강의 내용은 상담기술, 협상기술, 법률자문, 변호사사무실 경영 방법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교과서만으로는 이러한 다기한 상황을 설명하기 곤란한 현실을 학내 법무법인에서는 실제 사건을 학생들과 수업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다 쉽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와 달리 학내 로펌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에는 보탬이 되지 않지만 의뢰인에게는 최선일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협상, 조정, 중재 등의 재판외 분쟁해결방법론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민·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조화되는 교육

우리 민사소송법의 원칙은 균질의 동일한 방식의 교육을 지향하는 기존 연수

원 교육과 달리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사가 주도하여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 또는 원고변호사가 사건을 구성하고 풀어 나가면 피고 또는 피고변호사는 그 한도 내에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법관은 원·피고가 다룬 범위나 한도 내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변론주의를 취하는 한도에 있어서 민사 사건을 주도하고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피고 측 변호사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사법연수원의 변호사실무교육은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거의 고려하지 않아 변호사실무교육은 판사나 검사를 위한 교육의 부수적인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선에 머물러 있었다. 이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실무교육은 당사자 또는 변호사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민사소송법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개인지도형 변호사실무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반면 학내 법무법인은 기존 사법연수원의 교육처럼 졸업생들이 바로 판사나 검사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내 법무법인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수행하는 사건은 판사와 검사의 업무가 아니라 변호사업무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학생들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내법무법인에서의 실제 소송에 대한 경험은 현재 대법원에서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모의재판대회를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경험의 장일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이론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내 법무법인의 변호사 실무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수학기간인 3년은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기를 다지는데 짧지만은 않은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변호사로 바로 개업한 경력의 변호사 실무 강사에 의한 변호사 실무교육의 필요성

현장에서 소송을 해 보지 않은 개업변호사에게는 연수원에서 배운 이론적 지

식만으로는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떨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연수원 졸업생들이 지적하였듯이 겁을 먹은 상태로 자신감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의 부담을 해소해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자가 판사나 검사의 경력이 없이 변호사로 바로 개업한 변호사에 의한 교육이 될 것이다.

동시에 실무 변호사 강사는 실무교육을 함에 있어 단순히 만들어진 사례교육이 아닌 실제 사건을 가지고 소송의 전 과정을 다루는 방식으로 교육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선배 변호사로서의 실패담을 전해 주거나 소송자체를 함께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등의 강의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처신, 태도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고 판사와 검사의 입장에서 변호사를 보는 시각에 대한 조언도 교육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동시에 변호사 실무 강사는 상담, 조정, 협상 등 소송을 시작하기 전 또는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대응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의 업무는 법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의뢰인들을 대하는 자세나 요령, 예절 등에 대한 부분도 교육의 내용 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회계지식이나 부가세, 소득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내용들은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실무요령을 다룬 “실무편람”과 같은 안내서를 공동으로 편찬하는 작업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작은 규모의 변호사사무실은 자체의 예산으로 변호사 실무수습을 할 여력도 공간도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법무법인이 있다면 이들 시설을 수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육적 기능을 잃지 않는 실무 교육의 모색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에서는 기존 이론과목과 달리 학생들이 실제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운영되어

야 한다. 이 경우 학생은 자신이 맡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도 찾아내야 하므로 그 어느 교육방법보다 자기 나름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중요시된다. 또한 실제 사건을 다루는 것이므로 법적인 지식 못지 않게 일반인 고객을 상대하는 요령이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변호사의 법률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는 어려우나 법률서비스에 임하는 변호사의 성향이나 자세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단골 고객이나 대가없이 다른 고객에게 그 법률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고객의 상당수는 변호사의 법률실력보다 사건에 대한 노력과 고객에 대한 배려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고객이 심문당하는 느낌이 들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면서 핵심적인 정보를 짧은 시간에 얻어내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효과적인 협상 및 상담기법도 활용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사실조사, 수사기법, 소송준비를 위한 증거수집, 증인채택 요령, 직접신문과 반대신문 요령, 변론술 등을 클리닉 과목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또 때로는 당사자를 대신한 협상에서 필요한 기술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임상법학교육이 그러하듯이 임상교육이 이론보다 실무를 중요시한다고 하여 현실의 실무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무지나 변호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직업윤리에 위배에 기인하는 실무에 대해서는 현실의 실무관행을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상담당 교수는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변호사의 올바른 위상, 사회적 평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실제 체험을 통하여 구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무를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수가 아닌 실무가에게서 배우는 경우 현재의 관행만을 습득할 우려도 있다.

교육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법인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하여 실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의 속성상 로스쿨은 수익이 된다고 하여 현재의 좋지 않은 관행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내 법무법인은 교육적

기능을 잃지 않는 실무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변호사 직무대리자격 부여의 필요성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법률사건에 변호사로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미국의 각 주에서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학생실무규칙」을 제정하여 로스쿨 학생이 주법원에서 변호나 대리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은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수많은 한계가 있지만 매우 매력적인 방안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일정 학기를 마치고 지도교수의 추천과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인증이 있는 경우 지도교수와 같이 법정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보다 학습효과가 더 큰 실무교육 방식도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이미 사법연수원에서 고려하던 변호사의 지도하에 소위 동석수습이 행해지는 경우가 동일한 경우가 아닌가 한다. 다만 너무 부담이 크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국선변호인에 준하는 활동을 하게 하거나 민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준하는 사건, 소액사건 중에서 소송구조가 필요한 사건에 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변호사법의 개정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대한 의견조회 등 관련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7. 양성과정에서부터 행해지는 변호사윤리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후 변호사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교육은 기존 사법연수원의 판·검사 양성교육과 달리 '변호사의 입장'에서 실제 사건을 다루어 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하여 법률 현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하나의 이정표나 미리 해 본 경험이 되어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변호사는 판사와 검사의 입장과 달리 전혀 법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사실을 처음 대하여 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며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자기 나름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의뢰인을 대하는 방법에서부터 화해, 협상, 중재와 같은 소송외적인 서비스 능력을 포함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적절히 선택하고 소송절차의 장단점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세를 익힐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변호사는 여러 각도로 사건을 검토하는 힘을 키우고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해결방법을 창조적으로 모색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실무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 실무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 이론과목에서 기본 지식에 대한 철저히 이해를 한 토대 위에 실제 사건을 직접 다뤄보며 적용하는 인턴십 과정 또는 클리닉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 실무교육은 기존 변호사의 실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존의 법조직역현장에서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로 진출하는 경우 처음부터 불법적인 업무형태를 행하는 선배변호사에게 고용되어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경향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올바른 실무교육을 행하는 도제식 수업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총체적 과정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는 양성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윤리적 소양과 직업적 윤리의식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추천하는 종합적이고 다원화된 인재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동양 문헌

- (1) 사법연수원, 사법제도론, 2008.
- (2) 김도현, 한국의 소송과 법조,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 (3) 민사실무 I, 사법연수원, 2008.
- (4) 김선수, 사법개혁 리포트, 박영사, 2008.
- (5) 사법연수원, '00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1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0.
- (6) 사법연수원, 2001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2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1.
- (7) 사법연수원, 2002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3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2.
- (8) 사법연수원, 2003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4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3.
- (9) 사법연수원, 2005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6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5.
- (10) 사법연수원, 2006 사법연수원 교수 특별세미나, 2007년도 연수제도 개선방안, 2006.
- (11)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JURIST, 2003
- (12)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 도서출판 정법, 2007
- (13) 장영진/하혜경 저, 미국법[I], 법률문화원, 2008.
- (14) 김창록, 일본 사법개혁 논의의 경과와 현황 -법과대학원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司法制度比較研究會 제17회 연구발표회, 2004.

2) 서양 문헌

- (1) David F. Chavkin, Clinical Legal Education, Anderson Publishing company, 2002.
- (2) Benjamin N. Cardozo, The Nature of the Judicial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1921.
- (3) Robert A. Carp & Ronald Stidham, Judicial Process in America, CQ Press, 2001.

연구보고서 2009-05

**법학전문대학원 내 교육용 법무법인의 설치를
통한 변호사실무교육의 내실화 방안**

2009년 9월 일 인쇄
2009년 9월 일 발행

발행처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 소 : 서울 관악구 봉천동 856-1 대우디오슈페리움
C동 3층**

전 화 : 02) 888-2031

**인쇄처 :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